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 지침

2011. 11.



행정안전부

[목 차]

제1장 서론	1
1.1 목 적	3
1.2 추진 배경	3
1.3 적용 범위	3
1.4 용어의 정의	4
제2장 관련 규정 및 절차	9
2.1 보호구역 지정 근거 및 절차	9
2.1.1 지정대상	9
2.1.2 어린이보호구역	10
2.1.3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12
2.2 지정 및 해제 절차	13
2.2.1 지정·관리 절차	13
2.2.2 지정 요청자에게 의미와 지정시의 조치 설명	14
2.2.3 해제절차	16
2.3 보호구역 지정범위의 결정	16
2.3.1 범위지정의 기본 원칙	17
2.3.2 통학(이동)로 조사	19
2.3.3 지정대상 시설의 구간이 중복되는 경우	19
2.3.4 중복되는 경우 시·종점 교통안전시설 설치	27
2.4 속도 규제	31
2.4.1 도시지역 도로의 기능별 구분	31
2.4.2 도시지역 도로의 도시계획도로 기준에 의한 분류	32
2.4.3 지방지역 도로의 기능별 구분	32
2.4.4 국지도로, 집산도로의 속도제한	33
2.4.5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의 속도제한	34
제3장 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업수행 절차	37
3.1 보호구역 개선사업 절차 및 현황	39
3.1.1 개선사업 추진절차	39

3.1.2 초등학교등 사업대상 시설의 선정	40
3.1.3 기초조사 : 주변여건의 조사 분석	40
3.1.4 관계자 설문, 통학로 개발 및 관련기관 협의	41
3.1.5 기본설계도면 작성	41
3.1.6 지역관계자 현장 자문협의	42
3.1.7 실시설계	43
3.1.8 공사실시	43
3.1.9 개선효과 분석 및 평가	44
3.2 보호구역 대상별 시설우선순위 검토	44
3.2.1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관련 특성과 시설	44
3.2.2 노인의 교통관련 특성과 시설	45
3.2.3 장애인의 교통관련 특성과 시설	47
3.3 보호구역의 관리	49
3.3.1 보호구역 지정·관리 계획	49
3.3.2 보호구역 관리카드 작성	49
3.3.3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 작성	50
3.3.4 보호구역 지정 범위의 적정성 검토	50
3.3.5 보호구역 시설의 관리	50
제4장 보호구역내 시설기준	51
4.1 교통안전표지	53
4.1.1 규칙에서 정한 교통안전시설	53
4.1.2 시점표지	55
4.1.3 가로형 통합표지(시점에만 설치)	55
4.1.4 세로형 통합표지(시점 또는 구역내에 설치)	56
4.1.5 통합표지 바탕색	57
4.1.6 보호구역 내 개별표지 설치기준	58
4.1.7 해제 표지	64
4.2 노면표시	65
4.2.1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내 속도제한 노면표시	65
4.2.2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노면표시	66
4.2.3 서행(천천히) 노면표시	67
4.2.4 서행(지그재그)표시	68
4.2.5 일시정지 노면표시	68

4.3 무인 교통단속 장비	68
4.3.1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필요성	69
4.3.2 설치 장소	69
4.3.3 설치 절차·관리	69
4.3.4 무인 교통단속 표지의 규격 및 설치 방법	70
4.4 도로 적색포장	72
4.4.1 현황	73
4.4.2 문제점	73
4.4.3 개선	73
4.4.4 대체 시설로 시인성 확보	73
4.5 과속 방지턱	74
4.5.1 설치 장소	74
4.5.2 구조	74
4.5.3 시공시 유의사항	75
4.6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76
4.6.1 종류 및 설치기준	76
4.6.2 유의사항	77
4.7 횡단 시설	77
4.7.1 횡단보도 설치 일반 기준	78
4.7.2 노면표시를 이용한 횡단보도	78
4.7.3 고원식 횡단보도	79
4.8 보행자작동 신호기	82
4.8.1 설치기준	82
4.8.2 설치 권장 장소	82
4.8.3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 할 경우	83
4.8.4 안내표지의 설치	83
 제5장 보행 공간 확보	 85
5.1 설계 원칙	87
5.1.1 안전성	87
5.1.2 쾌적감	87
5.1.3 연속성	87
5.2 유효 보도폭	88
5.2.1 최소 유효 보도폭	88

5.2.2 유의사항	89
5.3 보도 설치공간 확보 기준	9
5.3.1 차로폭 조정을 통한 보행로 확보	9
5.3.2 일방통행제 시행을 통한 보도공간 확보	9
5.3.3 포장재질과 길가장자리구역선으로 보행공간 확보	19
5.3.4 도로폭원별 보·차도 구분 방안	92
제6장 장애인 안전시설	95
6.1 턱낮추기	97
6.1.1 일반적인 설치방법	97
6.1.2 횡단보도가 연결한 교차부에서의 설치방법	9
6.1.3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의 설치방법	9
6.2 연석경사로	99
6.2.1 연석경사로의 유형	100
6.2.2 연석경사로의 길이	100
6.3 점자블록	101
6.3.1 형태와 규격	101
6.3.2 설치방법 일반	102
6.3.3 설치장소별 설치방법	103
6.3.4 연속적인 방향유도	105
6.4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117
6.4.1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	107
6.4.2 송·수신기	107
부 록	111
부록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1
부록 2. 설문조사표 양식	132

표 목 차

<표 2-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10
<표 2-2>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	2
<표 2-3> 어린이 보호구역서 범칙금 부과 기준	5
<표 2-4> 어린이 보호구역서 과태료 부과 기준	5
<표 2-5> 도시지역 도로의 기능과 규모의 관계	3
<표 2-6> 도로의 구분	32
<표 2-7> 지방지역 도로의 개략적 특성	32
<표 2-8> 국지도로의 특성	33
<표 2-9> 집산도로의 특성	33
<표 2-10> 보조간선도로의 특성	34
<표 2-11> 주간선도로의 특성	35
<표 3-1> 보호구역 주변여건 조사 항목 및 내용	40
<표 3-2> 현장자문회의 참석범위 및 실시방법	42
<표 3-3> 실시설계 항목 및 내용	43
<표 3-4> 장애인의 분류 목록	47
<표 3-5> 장애종류별 통행시 필요한 능력	48
<표 3-6> 도로형 노면표시 반사성능	50
<표 4-1> 교통안전표지	53
<표 4-2> 노면표시의 설치	54
<표 4-3> 통합표지 바탕색	58
<표 4-4> 무인 교통단속 예고표지 설치 위치	71
<표 4-5> 과속방지턱의 설치위치 및 설치해서는 안 되는 위치	47
<표 4-6> 안내표지 설치·운영 사례	83
<표 5-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90
<표 5-2> 8m 도로 조성	92
<표 5-3> 10m 도로 조성	92
<표 5-4> 12m 도로 조성	93
<표 6-1> 연석경사로의 길이	100
<표 6-2> 점자블록의 형태 및 규격	101
<표 6-3> 위치 안내음향의 구성	108
<표 6-4> 교통섬 지역에서의 음성유도기 유도음향의 구성	108
<표 6-5> 신호 안내음향의 구성	109

그림 목차

[그림 2.1] 어린이 보호구역 추진경위	9
[그림 2.2] 보호구역 지정절차	14
[그림 2.3] 보호구역 해제절차	16
[그림 2.4] 통학(이동)로 조사결과와 해당범위	7
[그림 2.5] 도로의 일방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사례	8
[그림 2.6] 2개교차로 범위의 사례	18
[그림 2.7] 이동로 조사에 의한 보행통행 비율조사	9
[그림 2.8] 개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0
[그림 2.9] 2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합하여 지정하는 경우	12
[그림 2.10] 3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합하여 지정하는 경우	22
[그림 2.11] 개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3
[그림 2.12] 중복지역을 개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4
[그림 2.13] 중복지역을 단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52
[그림 2.14] 개별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경우	8
[그림 2.15] 중복지역을 단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7
[그림 2.16] 개별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경우 시·종점 표지	28
[그림 2.17] 2개 시설을 통합하여 지정하는 경우 시·종점 표지	28
[그림 2.18] 3개 시설을 통합하여 지정하는 경우 시·종점 표지	29
[그림 2.19] 개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시·종점 표지	29
[그림 2.20] 중복지역을 개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시·종점 표지	30
[그림 2.21]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시·종점 표지	30
[그림 3.1]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절차	39
[그림 3.2] 기초조사 실시 사례	40
[그림 3.3] 기본설계도 작성 예시	41
[그림 3.4] 주민설명회 사례	42
[그림 3.5] 관계기관 협의 사례	42
[그림 3.6] 실시설계 도면예시	43
[그림 3.7] 어린이 보호구역내 우선 고려할 시설	4
[그림 3.8] 노인보호구역내 우선 고려할 시설	4
[그림 3.9] 장애인보호구역내 우선 고려할 시설	8
[그림 4.1]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	4
[그림 4.2] 기존 노인보호구역 통합표지	4
[그림 4.3] 가로형 통합표지 기존·개선 비교	56
[그림 4.4] 세로형 통합표지 기존·개선 비교	57
[그림 4.5] (어린이)보호구역만 해제하는 경우	4
[그림 4.6] (어린이)보호구역과 속도제한을 해제하는 경우	46

[그림 4.7]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와 도로 원래의 속도를 안내하는 경우	56
[그림 4.8] 속도제한 노면표시(어린이보호구역안) 노면표시 규격	56
[그림 4.9] 기존 노면표시 설치사례	66
[그림 4.10] 속도제한 노면표시(어린이보호구역안) 시공사례	66
[그림 4.11] 속도제한을 하지 않는 구간의 보호구역 시점 노면표시	66
[그림 4.12]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노면표시 규격	76
[그림 4.13] 천천히(서행) 노면표시 규격	67
[그림 4.14] 서행표시(지그재그선) 노면표시 규격	8
[그림 4.15] 일시정지 노면표시 규격	68
[그림 4.16] 무인 교통단속표지 및 보조표지(예고) 로고·문안 예(기본형)	2
[그림 4.17] 암적색 미끄럼방지포장과 지그재그선	2
[그림 4.18] 과속방지턱	74
[그림 4.19] 일반적인 과속방지턱의 형상 및 제원	5
[그림 4.20] 과속방지턱의 표면 도색	75
[그림 4.21] 과속방지턱의 설치 예	76
[그림 4.22]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상세도	7
[그림 4.23] 횡단보도 표시 설치 예시도	8
[그림 4.24] 도류화 횡단보도 표시 설치 예시도	9
[그림 4.25] 대각선 횡단보도 표시 설치 예시도	9
[그림 4.26]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개념도	8
[그림 4.27] 고원식 횡단보도(일반구간) 형상 및 제원	8
[그림 4.28] 보도와 고원식 횡단보도의 부적절한 경사면 연결	18
[그림 5.1] 유효 보도폭	88
[그림 5.2] 최소 유효보도폭	88
[그림 5.3] 일방통행제와 연석구분을 통한 보도설치	9
[그림 5.4] 포장재질과 길가장자리 구역선으로 보도구분	19
[그림 6.1] 턱낮추기 유형 I : 상세 표준도	97
[그림 6.2] 턱낮추기 유형 I : 상세 표준도	98
[그림 6.3] 턱낮추기 유형 IV : 보도폭이 좁고 횡단보도간 간격이 좁은 경우	89
[그림 6.4] 유형 V : 보도폭이 넓고 횡단보도간 간격이 좁은 경우	99
[그림 6.5] 턱낮추기 유형 VI :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	9
[그림 6.6]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의 유형	100
[그림 6.7] 점형블록의 형태 및 규격	102
[그림 6.8] 선형블록의 형태 및 규격	102
[그림 6.9] 점자블록의 설치 유형 I : 횡단보도 설치의 기본형	8
[그림 6.10] 점자블록의 설치 유형 II : 보도의 폭이 좁은 경우	14
[그림 6.11] 점자블록의 설치 유형 III : 횡단 방향과 연석이 직각이 아닌 경우	4
[그림 6.12] 점자블록 유형 IV :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	104
[그림 6.13] 점자블록 유형 V : 두 횡단보도가 연결한 경우	15
[그림 6.14] 직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	106
[그림 6.15] 비스듬하게 유도되는 경우	106

제 1 장

서 론

- 1.1 목적
- 1.2 추진 배경
- 1.3 적용 범위
- 1.4 용어의 정의

1.1 목 적

2011년 1월부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더불어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및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면서 일원화가 되었고, 보호구역의 지정권자도 경찰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었고 보호구역 지정대상도 확대되었다.

따라서 본 통합추진지침은 향후 지정신청 되는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하여 보호구역의 지정범위 등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상세한 보호구역별 개선사업 기준을 마련함과 더불어 기 시행되어온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사업에 대한 개선점을 반영한 통합추진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보호구역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추진 배경

보호구역의 지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경우 다른 연령층이나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완성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199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2007년부터 노인보호구역, 2011년에는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행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고, 지정권자의 변경과 더불어 지정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지정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안전부령 제189호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2011년 1월 21일부로 제정되었고, 2011년 1월 24일부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에 의해 보호구역에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기존의 경찰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었으며, 보호구역지정시설이 학원, 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시설 등으로 확대 되었다.

따라서 본 지침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지정대상과 지정범위, 관리계획,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보도 및 도로부속시설의 설치, 속도제한, 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상세 기준과 절차 마련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

1.3 적용 범위

본 지침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작성 되었으며, 지정 대상 시설의 보호구역 지정절차, 보호구역 범위 결정, 관련시설 설치 등 보호구역 관련 제반 업무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단, 노인·장애인의 행동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화된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본 지침에서 별도로 설명한 기준에 의한다.

1.4 용어의 정의

■ 고원식 교차로(raised intersection, 플래토)

도로위계가 낮은 가로상의 교차로 전체를 인위적으로 높여 교차부의 포장 색상이나 재질을 이용하여 차량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법

■ 과속방지턱

주로 주거단지, 학교부근 등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지역에서 차량의 속도를 낮추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턱(건설교통부 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 과속방지시설

일정 도로구간 또는 지역에서 교통의 안전과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과속방지턱, 쿠션, 플래토 등으로 구분

■ 길가장자리 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방호시설

차량의 도로이탈을 방지하고 보행자, 구조물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도로의 측방에 설치하는 도로 부속시설의 총칭

■ 보도(sidewalk)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의 일부로 연석 또는 방호울타리,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이용하여 사람과 차량을 물리 적으로 분리하거나, 노면표시를 사용하여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한 보행자용 도로

■ 보도용 방호울타리(sidewalk crash barrier)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 보도로 침범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pedestrian crash barrier)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 보행자작동 신호기

버튼을 누르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작동되는 신호기. 보통 차량 통행량이 적고, 특정시간대에만 보행자들의 횡단이 많을 경우에 설치

■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

■ 보행장애물(pedestrian obstacle)

보도 등에 설치된 가로등, 전주, 가로수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장애인 등의 보도 상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 연석(curb)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운전자의 시선유도나 차도를 벗어난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

■ 연석경사로(mountable curb)

턱낮추기를 시행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경사로

■ 유효보도폭

보도 폭에서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폭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

■ 일방통행제

혼잡한 도시 내 도로에서 교통안전 및 용량 증대를 위해 차량이 한 방향으로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운영기법

■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bollard)

횡단보도 부근의 턱 낮추기 구간에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거나 우회전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안전 시설물

■ 점자블록(braille block)

도로상에 설치하는 장애인 안전시설의 일종으로 시각장애인이 보행 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으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으로 구분하여 사용

- 종단경사(profile grade)

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비율

- 차도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

- 차로

차량이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

- 차선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

- 턱낮추기

장애인, 특히 휠체어사용자,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 진입부의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줄이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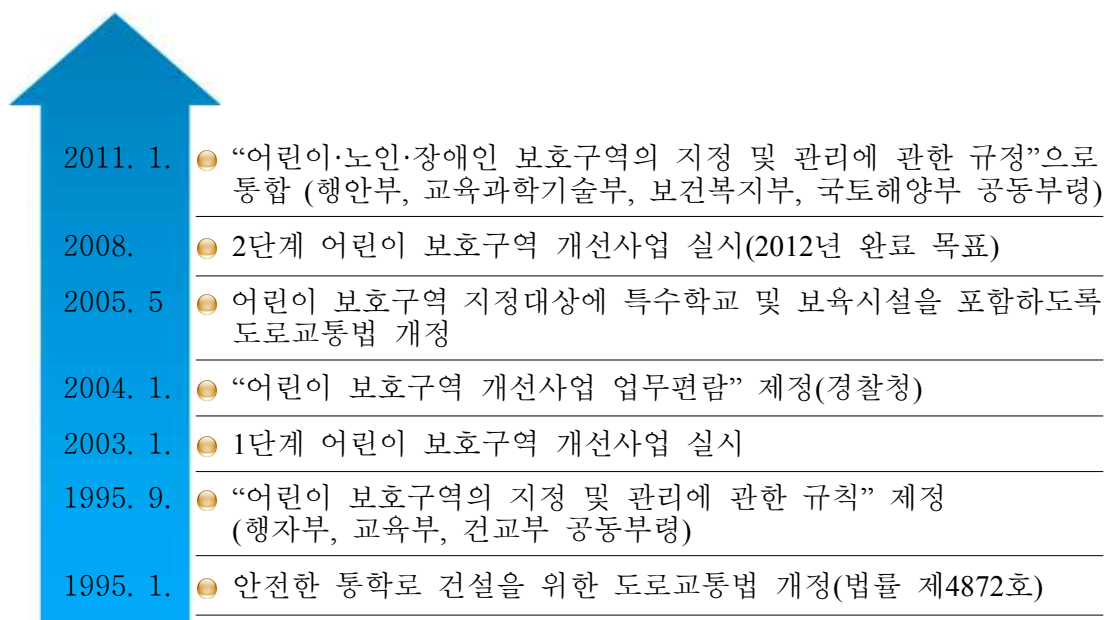
제 2 장

관련 규정 및 절차

- 2.1 보호구역 지정 근거 및 절차
- 2.2 지정 및 해제 절차
- 2.3 보호구역 지정범위의 결정
- 2.4 속도 규제

2.1 보호구역 지정 근거 및 절차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어린이·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구역의 지정은 최초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제도의 추진이 결정되어 1995년 1월 안전한 통학로 건설을 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동년 9월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행정자치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공동부령으로 제정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왔다.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이 2005년부터는 학교 이외에 특수학교 및 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기존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폐기되면서 일원화되었다.



[그림 2.1] 어린이 보호구역 추진경위

일반적으로 실버존(silver zone)이라 불리는 노인보호구역의 경우는 2007년 5월 행정자치부령으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시행되면서부터 지정되기 시작하였고, 2011년 1월 제정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다. 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는 2011년 전술한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도입되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확대와 더불어 장애인 보호구역이 신설되었으며,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었던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환원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2.1.1 지정대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지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근거하며 보호구역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같다. 구체적인 관리지침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공동부령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2.1.2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② ‘초·중등 교육법’ 제38조 및 제3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③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3항과 4항의 보육시설 및 학원의 경우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및 학원을 의미한다.

<표 2-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연번	지정대상	관련 법조항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 (정의)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유치원의 구분 가.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나.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초·중등 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중등 교육법 제38조 (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 교육법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육시설에만 해당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도로교통법 제14조 (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이란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말한다. 다만,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조 (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 ②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1.3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근거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관리지침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표 2-2>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연번	지정대상	관련 법조항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 (정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2	‘자연공원법’ 제2조 및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 (정의)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郡立公園)을 말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나 목에 따른 공원으로서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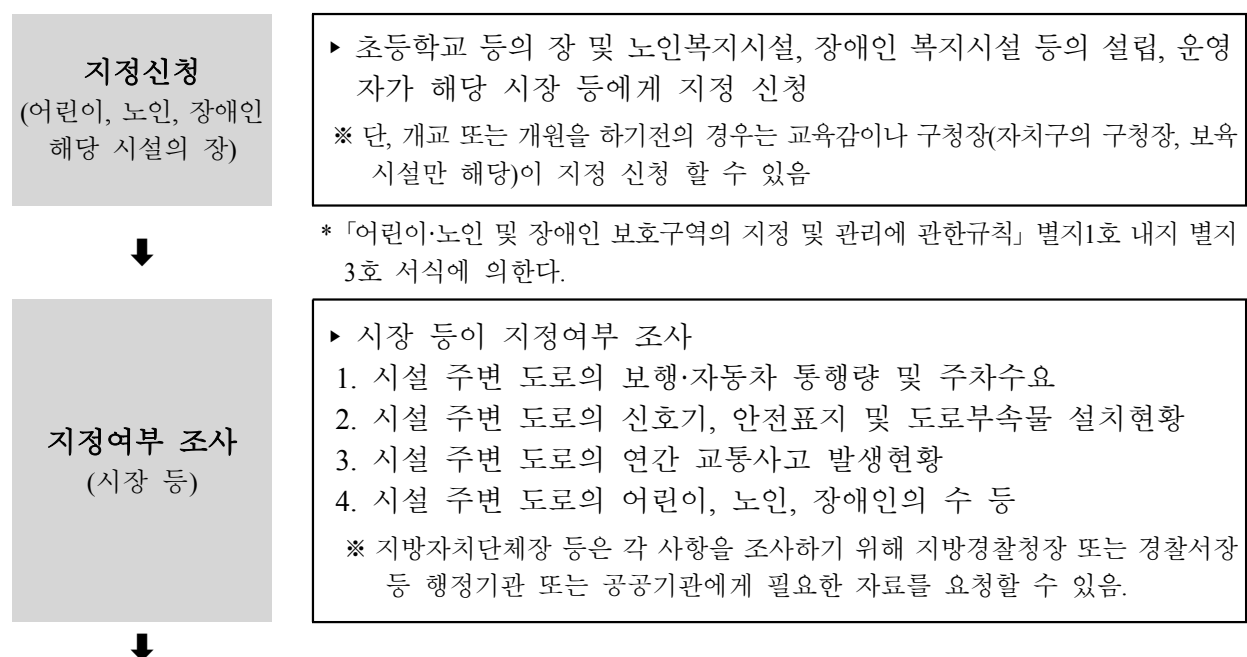
	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등의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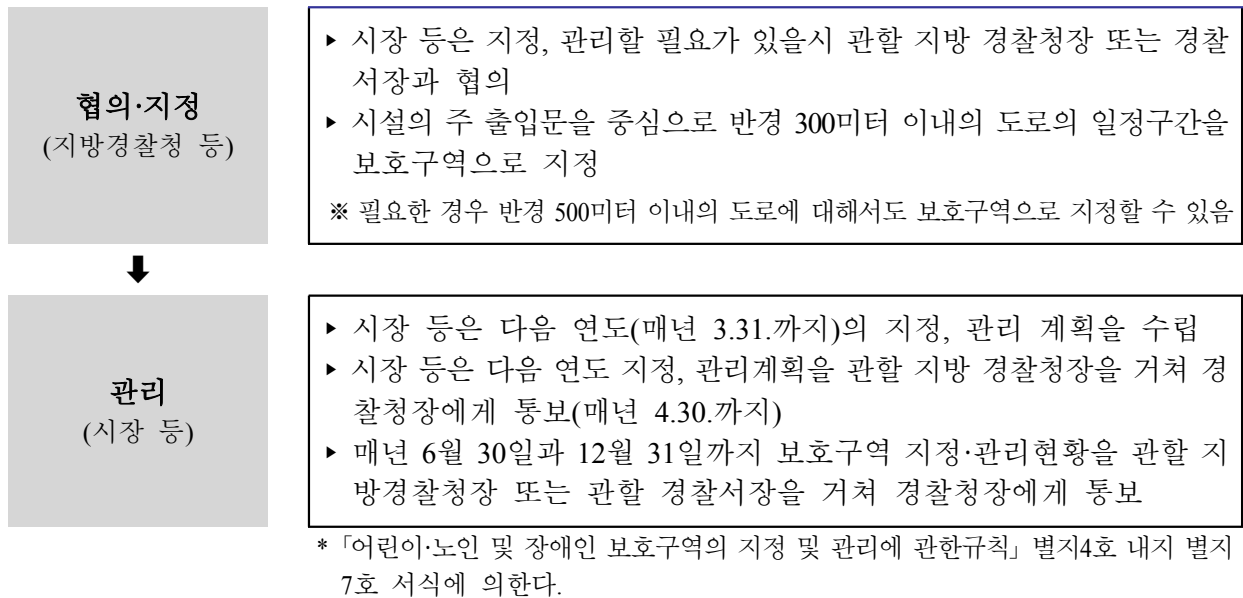
2.2 지정 및 해제절차

대상 시설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는 초등학교등의 장이,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시장등에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의한다.

2.2.1 지정·관리 절차

보호구역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조사를 거쳐 보호구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할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일련의 절차 및 내용 등은 다음의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보호구역 지정절차

2.2.2 지정 요청자에게 의미와 지정시의 조치 설명

시장등은 초등학교등의 장, 노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로부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 지정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기 전에 우선 지정 요청자에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실시하게 되는 개선사업의 내용과 보호구역에서 취하게 될 필요한 조치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 시장등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2. 통행제한

: 경찰에서는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을 위하여 구간별·시간대 별로 차량통행 제한을 할 수 있다.

3. 주·정차 금지

: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한다.

4. 차량 운행속도 제한

: 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의 운행 제한속도를 30Km/h이하로 제한 할 수 있으며 특히 이면도로(국지도로, 집산도로)에서는 반드시 30Km/h이하로 속도제한을 하여야 한다.

5. 초등학교 등의 경우 보호구역내 가중처벌 규정

: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교통사고 유발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위반내용에 따라 최대 2배까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내용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2-3> 어린이 보호구역서 범칙금 부과 기준

위 반	위반시간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신호, 지시위반	20:00~08:00	7만원	6만원	4만원
	08:00~20:00	13만원	12만원	8만원
40km/h 초과	20:00~08:00	10만원	9만원	6만원
	08:00~20:00	13만원	12만원	8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20:00~08:00	7만원	6만원	4만원
	08:00~20:00	10만원	9만원	6만원
20km/h 이하	20:00~08:00	3만원	3만원	2만원
	08:00~20:00	6만원	6만원	4만원
주정차 위반	20:00~08:00	5만원	4만원	
	08:00~20:00	9만원	8만원	

※ (시행 2011.1.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관련) 과태료에 비하여 1만원 적음

<표 2-4> 어린이 보호구역서 과태료 부과 기준

위 반	위반시간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신호, 지시위반	20:00~08:00	8만원	7만원	5만원
	08:00~20:00	14만원	13만원	9만원
40km/h 초과	20:00~08:00	11만원	10만원	7만원
	08:00~20:00	14만원	13만원	9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20:00~08:00	8만원	7만원	5만원
	08:00~20:00	11만원	10만원	7만원
20km/h 이하	20:00~08:00	4만원	4만원	3만원
	08:00~20:00	7만원	7만원	5만원
주정차 위반	20:00~08:00	5만원	4만원	2시간 이상 1만원 추가
	08:00~20:00	9만원	8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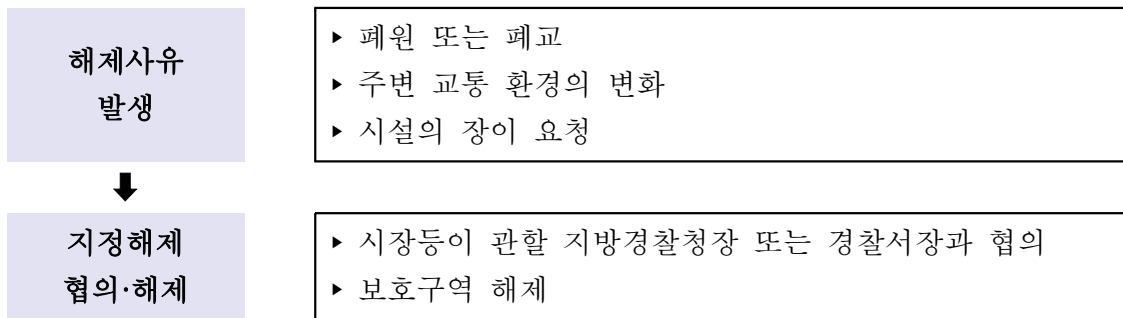
※ (시행 2011.1.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관련)

6. 보호구역 지정시 개선내용

: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을 경우 보호구역의 범위 결정 방법과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게 되는 각종 시설, 보·차 분리 등 개선사업의 주요 내용

2.2.3 해제절차

어린이 보호구역의 해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폐원이나 폐교, 주변 교통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보호구역으로의 지정 및 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를 통해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게 된다. 일련의 절차 및 내용 등은 다음의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보호구역 해제절차

2.3 보호구역 지정범위의 결정

보호구역의 범위에 대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시장 등은 해당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정범위의 판단을 위해 시장등은 보호구역 지정 전에 아래의 현황조사를 충실히 하여 실제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 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 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 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 시설 주변 도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 시설 주변 도로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수 등

※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 단일 보호구역의 최대범위는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로 설정하여야 하며,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로 지정하는 경우는 보호구역의 중복으로 인해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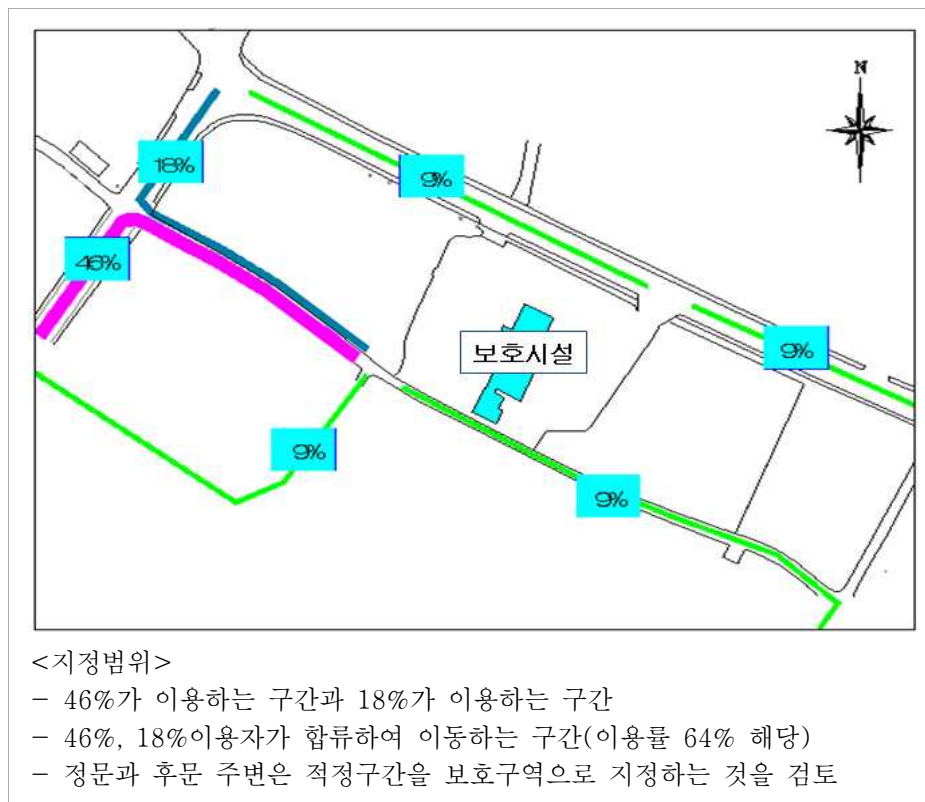
이상의 보호구역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우 이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3.1 범위지정의 기본 원칙

보호구역의 범위는 통학(이동)로 조사를 통해 학교(시설)를 이용하는 이동경로를 우선 파악하여야 하며, 보호구역은 이동경로 조사와 관계자 설문, 관련기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소한의 범위를 지정하여 관련시설이 집중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 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내에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간을 보호구역의 범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시설의 출입을 위한 정문과 후문 주변은 도로의 이용률이 10%에 미달하더라도 적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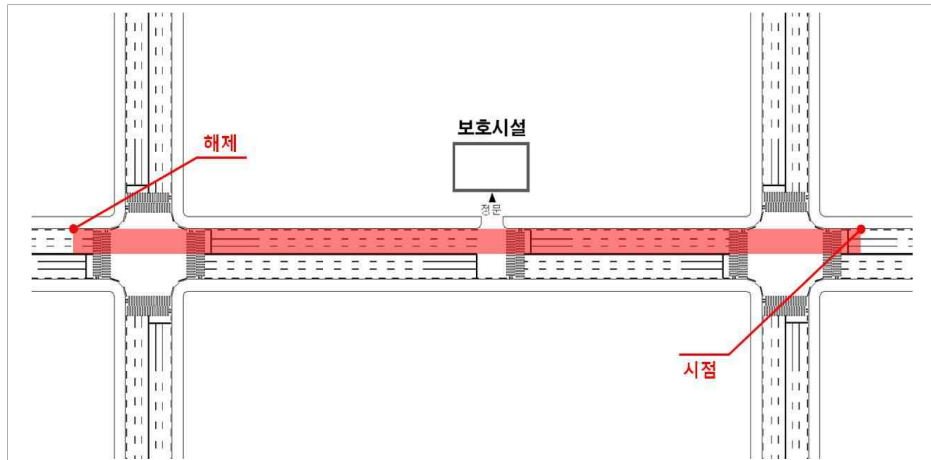
단, 보·차 구분이 없는 보·차혼용도로는 시설이용자의 도로 이용률이 10% 이상인 경우 아래의 다른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지의 경우는 등·하교를 위하여, 노인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는 대상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시설의 이용자 10%이상이 이용하는 도로.



[그림 2.4] 통학(이동)로 조사결과와 해당범위

2. 실제 등·하교 또는 시설이용을 위하여 도로를 횡단이 발생하는 구간 범위 내. 단, 시설의 주 출입문 앞은 횡단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에는 도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로의 일방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는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이용자가 문방구점 등 상가를 이용하기 위한 횡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 ◁ 방향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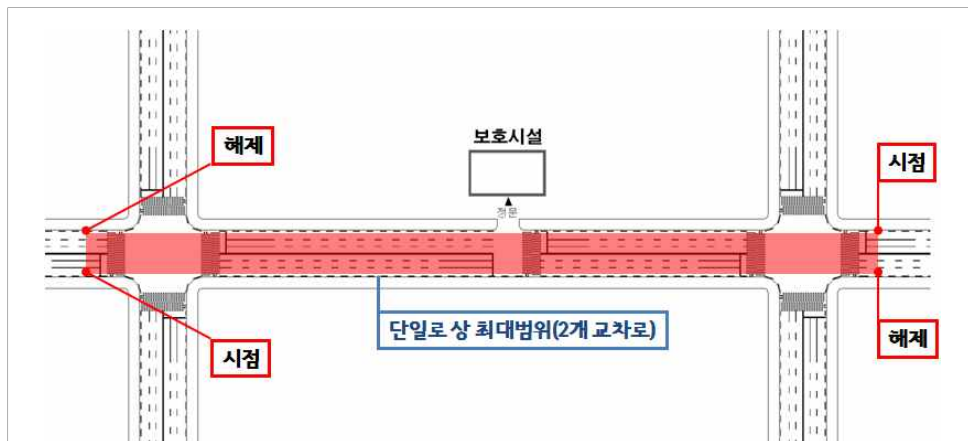
<주의사항>

-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만 적용한다.
- 도로 건너편의 상가 등을 이용하는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지정한다.

[그림 2.5] 도로의 일방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사례

3. 지정 대상시설 주변에 횡단보도가 조성되어 있는 신호 교차로가 있는 경우, 가로축별 2개교차로의 범위 이내에서 초등학교 등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교차로 진입 지점을 시점으로 한다.

즉, 단일도로상에 보호구역 구간 결정시 3개 신호교차로 이상은 지정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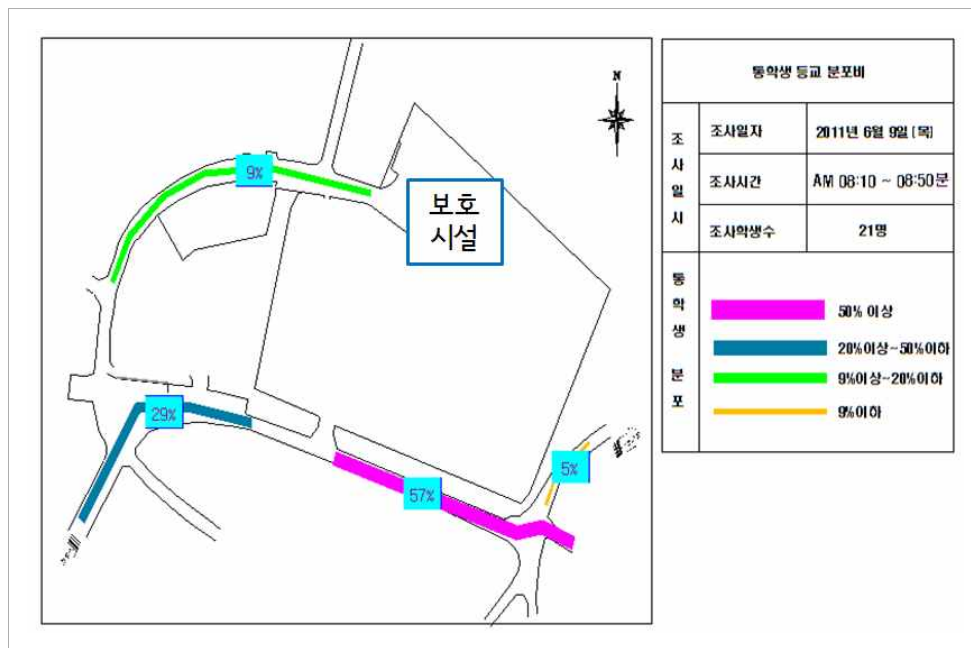
<주의사항>

- 단일로 횡단보도는 2개의 신호교차로 범위에서 제외한다.
- 도로의 이용률이 10%이상인 도로 중 가로축별 2개 신호교차로 이내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2개교차로의 횡단만으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 보·차 혼용도로의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림 2.6] 2개교차로 범위의 사례

2.3.2 통학(이동)로 조사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부록 2>의 설문 조사서를 어린이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설문조사서에 첨부된 대상시설 300미터 이내의 지도에 등·하교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이동 동선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각 이동 경로별로 주변도로의 이용 비율을 표시하도록 한다. 도면에 이동 동선을 표현하기 곤란한 유치원·보육시설·장애인생활시설 등의 경우는 관련시설의 운영자를 통해 주변 도로별 통학(이동)로를 조사할 수 있다.



[그림 2.7] 이동로 조사에 의한 보행통행 비율조사

2.3.3 지정대상 시설의 구간이 중복되는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이 인접되어 있는 경우 1개 보호구역의 해제 지점과 새로운 보호구역의 시점간의 거리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의 범위가 인접 보호구역과의 거리가 200미터 이하 또는 중복될 경우는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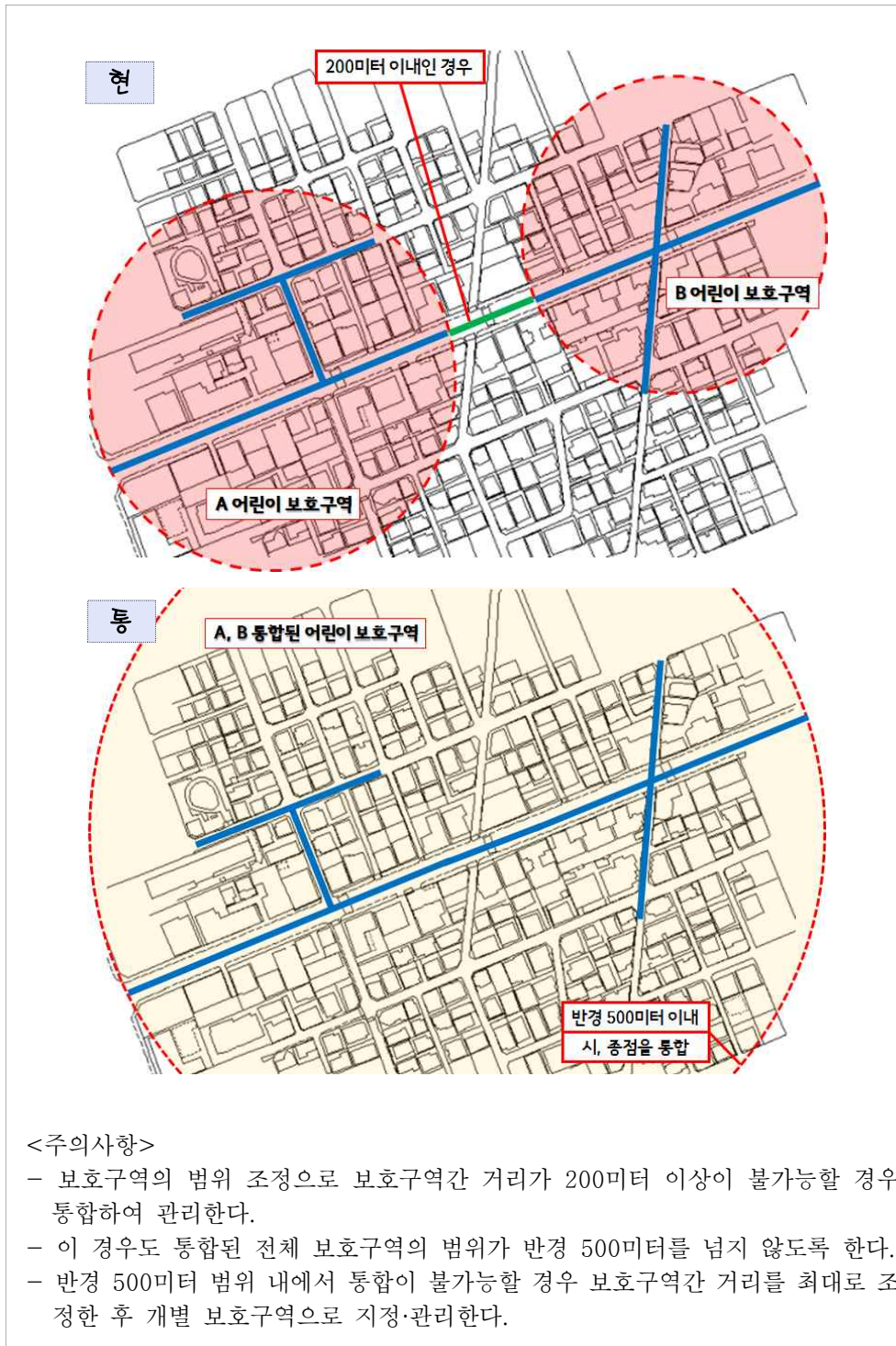
단, 인접 보호구역이 같은 이동로에 위치하고 있지 않거나 도로의 이용형태상 1개 보호구역을 통과한 차량이 인접 보호구역에 재 진입하는 경우가 적은 경우에는 보호구역간 거리가 200미터 이하이라도 개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이 중복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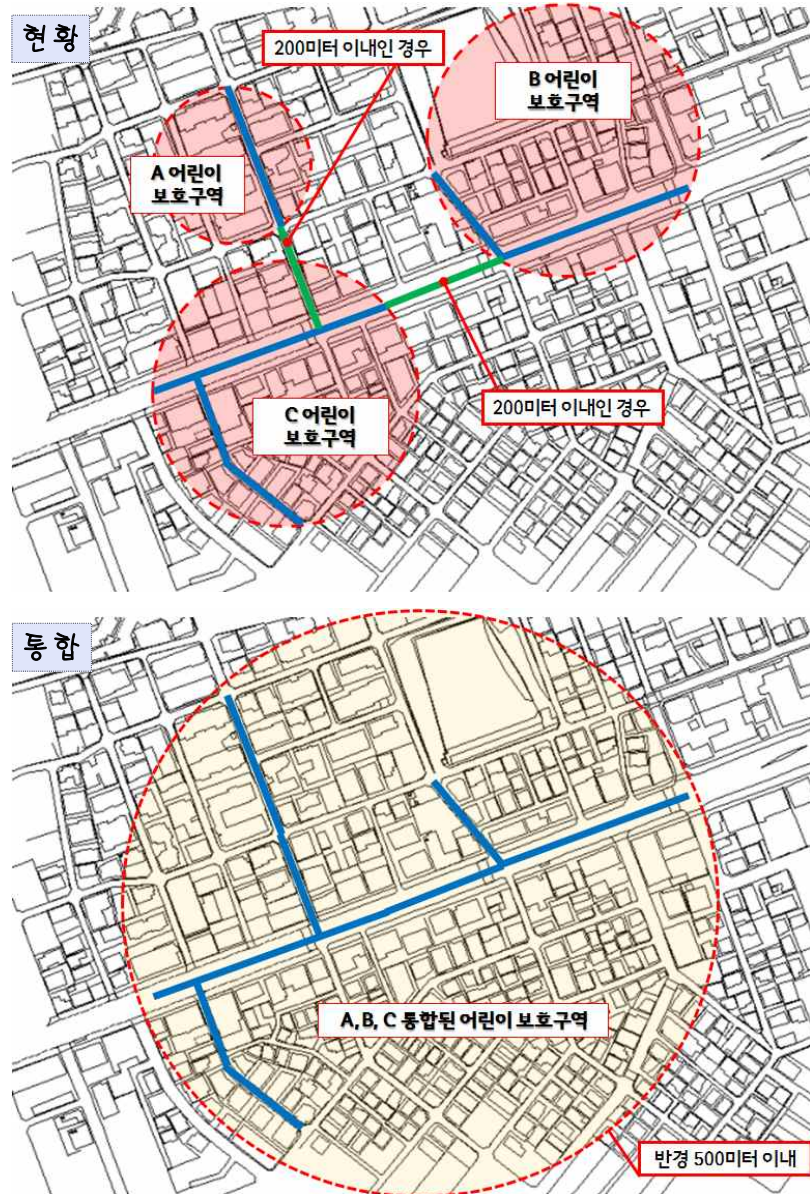
‘2.3.1 범지구지정의 기본 원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보호구역의 범위를 조정하여 인접 어린이보호구역간의 거리를 200미터 이상으로 조정하여 개별 보호구역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하게 중복될 경우는 2개의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2개 이상의 보호구역을 단일 보호구역으로 시·종점을 지정한다. 이때도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의 범위가 반경 500미터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그림 2.8] 개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림 2.9] 2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합하여 지정하는 경우



<주의사항>

- 보호구역의 범위를 조정으로 보호구역간 거리가 200미터 이상이 불가능할 경우 통합하여 관리한다.
- 이 경우도 통합된 전체 보호구역의 범위가 반경 5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반경 500미터 범위 내에서 통합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구역간 거리를 최대한으로 조정 후 개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

[그림 2.10] 3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합하여 지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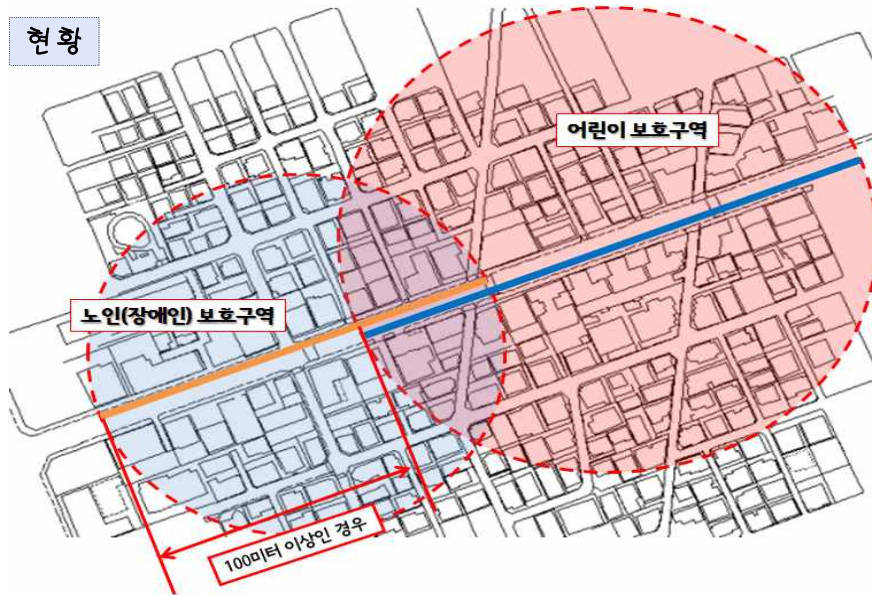
2.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 중복되는 경우

‘2.3.1 범지구지정의 기본 원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보호구역의 범위를 조정하여 인접 보호구역과의 거리를 200미터 이상으로 조정하여 개별 보호구역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하게 중복될 경우는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종점을 시설 설치기준에 의하여 관련 시설로써 설치하고 전체 중복구간 중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시·종점을 별도로 설치한다. 즉, 중복된 전체구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의 구간을 우선적으로 명확히 하고 남은 구간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때도 전체 보호구역의 범위가 반경 500미터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외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구간 길이가 100미터 이하일 때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지정·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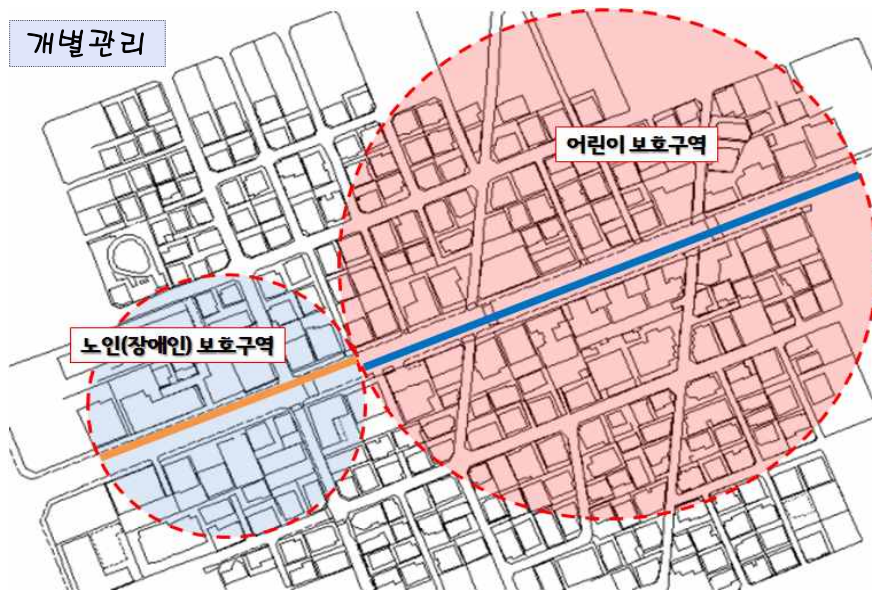


[그림 2.11] 개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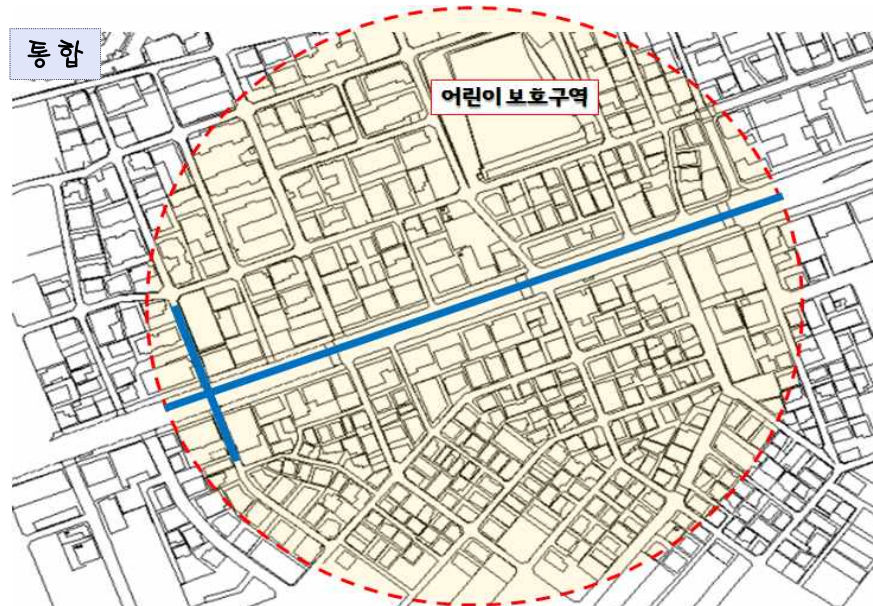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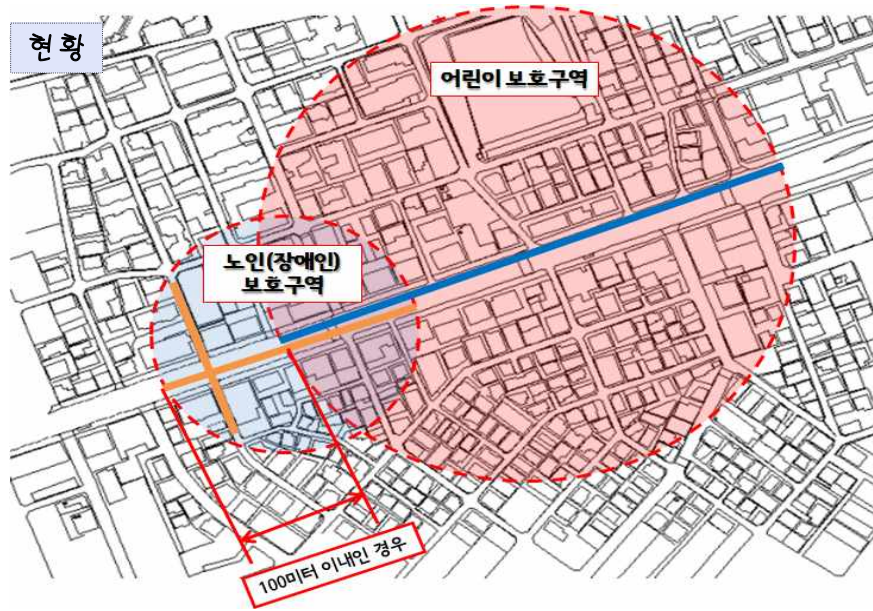
개별관리



<주의사항>

- 중복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
- 나머지 구간을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관리한다. 이 경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구간이 100미터 이하인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지정한다.
- 이 경우도 전체 보호구역의 범위가 반경 5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반경 500미터 범위 내에서 지정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구역간 거리를 최대한로 조정 후 개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림 2.12] 중복지역을 개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주의사항>

- 보호구역 범위가 중복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 100미터 이하인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지정·관리한다.
- 이 경우도 전체 보호구역의 범위가 반경 5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반경 500미터 범위 내에서 지정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구역간 거리를 최대한으로 조정 후 개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림 2.13] 중복지역을 단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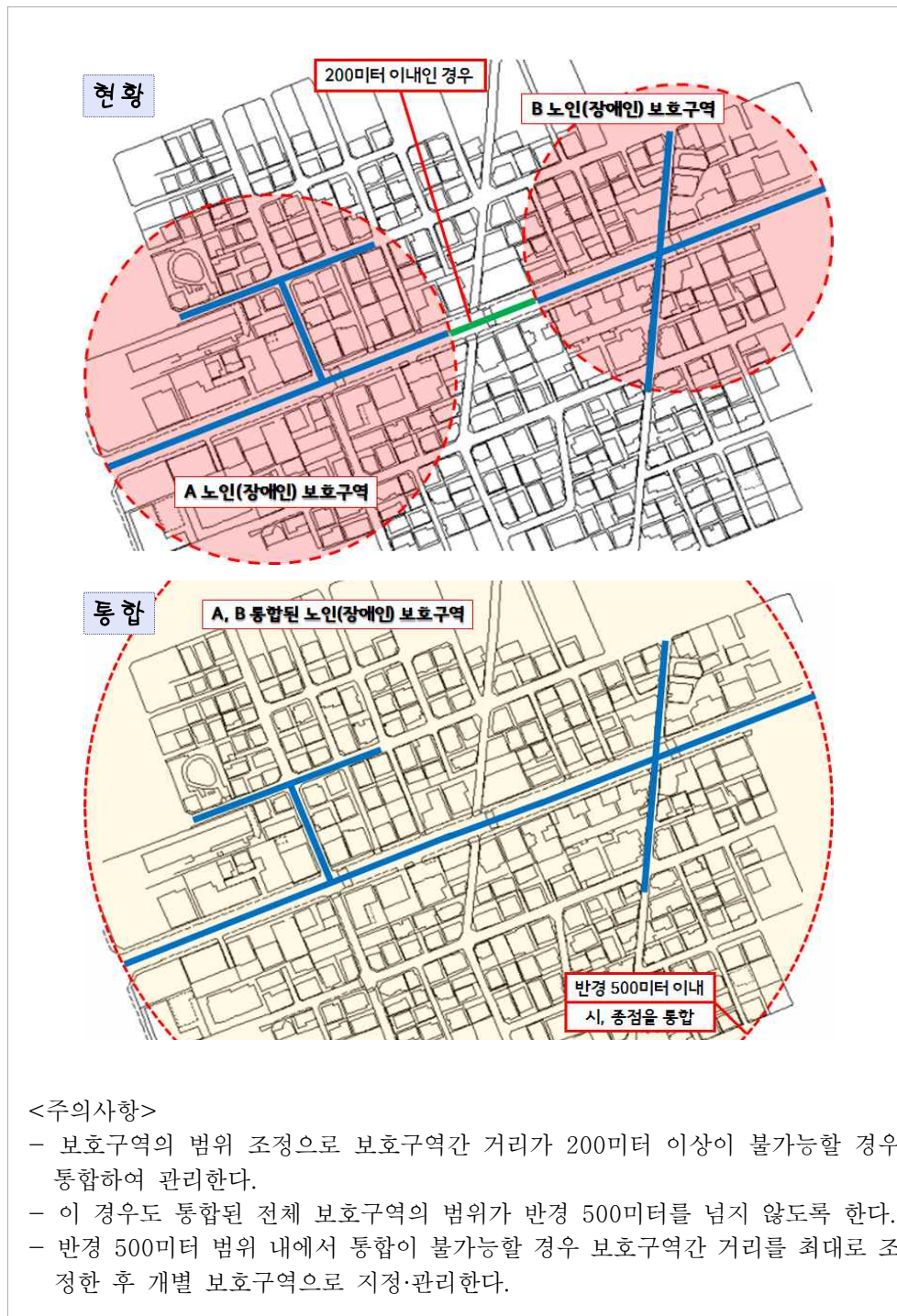
3. 노인(장애인)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 중복되는 경우

‘2.3.1 범지구지정의 기본 원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보호구역의 범위를 조정하여 인접 보호구역간의 거리를 200미터 이상으로 조정하여 개별 보호구역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하게 중복될 경우는 2개의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또는 2개 이상의 보호구역을 단일 보호구역으로 시·중점을 지정한다. 이때도 전체 보호구역의 범위가 반경 500미터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이 중복될 경우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의 구간을 명확히 하고 남은 구간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장애인보호구역의 구간 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때에는 노인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지정·관리한다.



[그림 2.14] 개별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경우



[그림 2.15] 중복지역을 단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2.3.4 중복되는 경우 시·중점 교통안전시설 설치

1.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이 중복될 경우

개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 보호구역마다 시·중점부에 해당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합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전체 구간의 시·중점에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시점표지와 해제표지를 설치한다.



[그림 2.16] 개별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경우 시·종점 표지



[그림 2.17] 2개 시설을 통합하여 지정하는 경우 시·종점 표지



[그림 2.18] 3개 시설을 통합하여 지정하는 경우 시·종점 표시

2.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 중복되는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의 시·종점에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시점표지와 해제표지를 설치하고 일부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일부구간의 시·종점을 해당 노인(장애인)보호구역 해당 교통안전표지 설치한다.



[그림 2.19] 개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시·종점 표시



[그림 2.20] 중복지역을 개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시·종점 표지



[그림 2.21]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시·종점 표지

3.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이 중복되는 경우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이 중복되는 경우, 노인보호구역표지를 우선하여 구간을 안내한다. 즉,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중복 시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을 우선하여 시·종점을 안내한다.

2.4 속도 규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제1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정범위 내의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유지할 것인지 또는 시속 30킬로미터로 속도제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많은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이 실제 제한속도가 지켜지지 않는 보조간선도로 이상의 도로에도 속도제한을 하여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본 지침에서는 지방지역·도시지역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의하여 제한속도를 30Km/h이하로 제한하는 도로와 원칙적으로 도로 고유의 속도를 유지하는 도로로 구분하였다.

2.4.1 도시지역 도로의 기능별 구분

도시지역 도로들의 기능별 특성, 도로의 기하구조 특성, 교통류의 특성, 교통량 규모, 주차 설계 특성 등에 대한 개략적 특성을 요약하면 <표 2-5>과 같다.

<표 2-5> 도시지역 도로의 기능과 규모의 관계

구분 \ 분류	도시고속도로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주 기 능	우리나라 간선도로망 연결	해당 도시의 간선도로망 구축	주간선도로를 보완함	해당 도시 안 생활권 주요 도로망 구축	시점과 종점
도로 전체 길이에 대한 백분율(%)	5 ~ 10		10 ~ 15	5 ~ 10	60 ~ 80
도시 전체 교통량에 대한 백분율(%)	0 ~ 40	40 ~ 60		5 ~ 10	10 ~ 30
배치 간격(km)	3 ~ 6	1.5 ~ 3	0.75 ~ 1.5	0.75 이하	-
교차로 최소간격(km)	1.0	0.5 ~ 1.0	0.25 ~ 0.5	0.1 ~ 0.25	0.03 ~ 0.1
설계 속도(km/hr)	100 ~ 80	80 ~ 60	60 ~ 50	50 ~ 40	40 ~ 30

구분 \ 분류	도시고속도로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노상주차 여부	불허	원칙적 불허	제한적 허용	허용	허용
접근관리 수준	출입제한	강함	보통	약함	적용안함
도로 최소 폭(m)		35	25	15	8
중앙 분리 유형	분리	분리	분리 또는 비분리	비분리	비분리
보도 설치 여부	설치안함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최소 차로 폭(m)	3.5	3.5~3.25	3.25~3.0	3.0	3.0~2.75

2.4.2 도시지역 도로의 도시계획도로 기준에 의한 분류

우리나라에서 도시지역 도로에 대한 설계는 주로 국토해양부의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규칙에 의하면 도로는 폭원에 따라 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하게 되어 있다. 도로의 기능과 폭원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경우 연계성이 높으므로 도시계획도로 기준과 연계하여 도로를 구분하면 다음 <표2-6>과 같다.

<표 2-6> 도로의 구분

구 분	도시계획도로 분류기준
주 간 선 도 로	광 로 , 대 로
보 조 간 선 도 로	대 로 , 중 로
집 산 도 로	중 로
국 지 도 로	소 로

2.4.3 지방지역 도로의 기능별 구분

지방지역 도로들의 기능별 특성, 관할권에 의한 분류, 도로의 기하구조 특성, 교통류의 특성, 교통량 규모 등에 대한 개략적 특성을 요약하면 <표2-7>과 같다.

<표 2-7> 지방지역 도로의 개략적 특성

구 분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로의 종류 및 등급	국도	국도의 일부와 지방도 대부분	지방도 일부	군도 대부분과 농어촌 도로
평균통행거리	5km 이상	5km 이상	3km 미만	1km 미만
평균주행속도 (km/h)	60	50	40	30
유출입지점간 평균간격 (m)	700	500	300	100
동일기능 도로간 평균간격 (km)	3.0	1.5	0.5	0.1
설계 속도 (km/h)	80~60	70~50	60~40	50~40
계획교통량 (대/일)	10,000이상	2,000~10,000	500~2,000	500 미만

2.4.4 국지도로, 집산도로의 속도제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내 <표2-8>과 <표2-9>의 특성을 갖는 국지도로와 집산도로는 30Km/h이하로 속도를 제한한다.

<표 2-8> 국지도로의 특성

1. 도시지역

도시지역에서 가장 기능이 낮은 도로이며, 동시에 접근성은 가장 좋은 도로이다. 따라서 도시 지역에 위치한 각종 주요 교통유발시설 주변에 위치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 ① 차량 통행보다는 보행이나 자전거 통행을 배려해야 한다.
- ②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배려가 충분해야 한다.
- ③ 가능한 차로 수는 줄이고 보도 폭은 넓게 하여 도시를 관통하는 차량이 이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 ④ 설계속도는 가능한 낮게 하여 도시 오픈스페이스로서의 기능과 생활도로로서의 기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생활도로설계(Woonerf Design)와 교통진정기법(traffic calming techniques)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도로법 제15조의 구도 중 집산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도로와 생활도로 등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2. 지방지역

도로법 제14조 군도 중 집산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도로와 농어촌 도로 등 기능이 매우 낮은 도로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지도로는 군 내에 위치한 주거단위에 접근하기 위해 제공하며, 통행거리도 짧고, 우리나라 도로망 중에서 도로 기능이 가장 낮은 도로이다.

<표 2-9> 집산도로의 특성(계속)

1. 도시지역

도시지역을 몇 개 생활권으로 세분해보면, 이들 생활권별로 생활권을 지원하는 주요 도로축을 선정할 수 있는데 이 주요 도로축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 ① 도시 지역 보조간선도로에 평행하게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조간선도로를 보완한다.
- ② 생활권 내에 위치한 주요 시설물을 연결한다.
- ③ 이동성보다는 접근성을 위주로 한다.
- ④ 설계속도는 40~50 km/hr 정도다.
- ⑤ 도로법 제13조 시도 중 보조 간선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도로와 제15조의 구도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표 2-9> 집산도로의 특성

2. 지방지역

지역 내의 통행을 담당하는 도로로서 광역기능을 갖지 않는 도로다.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 ① 보조 간선도로를 보완하는 도로다.
- ② 군 내부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다.
- ③ 군 내부의 주거단위에서 발생하는 교통을 받아 보조 간선도로에 연결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 ④ 도로법 제12조 지방도 중 보조 간선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도로와 제14조의 군도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2.4.5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의 속도제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내 <표2-10>과 <표2-11>의 특성을 갖는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는 원칙적으로 도로 고유의 제한속도를 유지한다. 단, 무단횡단 방지시설(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등)과 보도조성으로 보·차 분리가 되어있고,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표 2-10> 보조간선도로의 특성

1. 도시지역

도시지역 주간선도로에 연결하여 주간선도로 기능을 보완하는 도로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 ① 도시지역 주간선도로와 평행하게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간선도로와 달리 보조간선도로 시점이나 종점 중 한개는 도시지역 내부에 위치한다.
- ② 평균 주행거리는 1~3km, 설계속도는 50~60km/hr 정도이다.
- ③ 도로법 제11조의 특별시도·광역시도 중 주간선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도로와 도로법 제13조의 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2. 지방지역

주 간선도로에 연결시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 ① 주 간선도로를 보완하는 도로다.
- ② 주 간선도로에 비해 통행거리가 다소 짧으며, 간선기능이 다소 약한 도로다.
- ③ 군(郡) 상호간의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13조의 일반국도 중 주간선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도로와 도로법 제15조의 지방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표 2-11> 주간선도로의 특성

1.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로망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도로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 ① 도시지역 내부에 위치한 주요 도시 시설물들을 연결한다.
- ② 교통량 규모가 크고 통행길이가 비교적 길다.
- ③ 지방지역 주간선도로가 도시지역을 통과할 때, 도시지역 통과구간 역할을 감당한다.
- ④ 설계속도 60~80km/hr이다.
- ⑤ 평균 주행거리는 3.0km 이상이며, 간선도로끼리의 배치간격은 1.5~3.0km이다.
- ⑥ 도로법 제11조의 특별시도·광역시도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2. 지방지역

우리나라 도로망의 주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 ① 지역 상호간의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인구 50,000명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여기에 해당한다. 장래 우리나라 도로망 구축을 위해 인구 25,000명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도 일부 여기에 포함시킨다.
- ② 지역 간 이동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로서 통행길이가 비교적 길고 통행밀도도 비교적 높다.
- ③ 지역 간 통과교통이 위주이며, 장래 우리나라 도로망 구축을 위해 4차로 이상의 도로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한 도로가 해당한다.
- ④ 도로법 제8조의 일반국도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 3 장

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업수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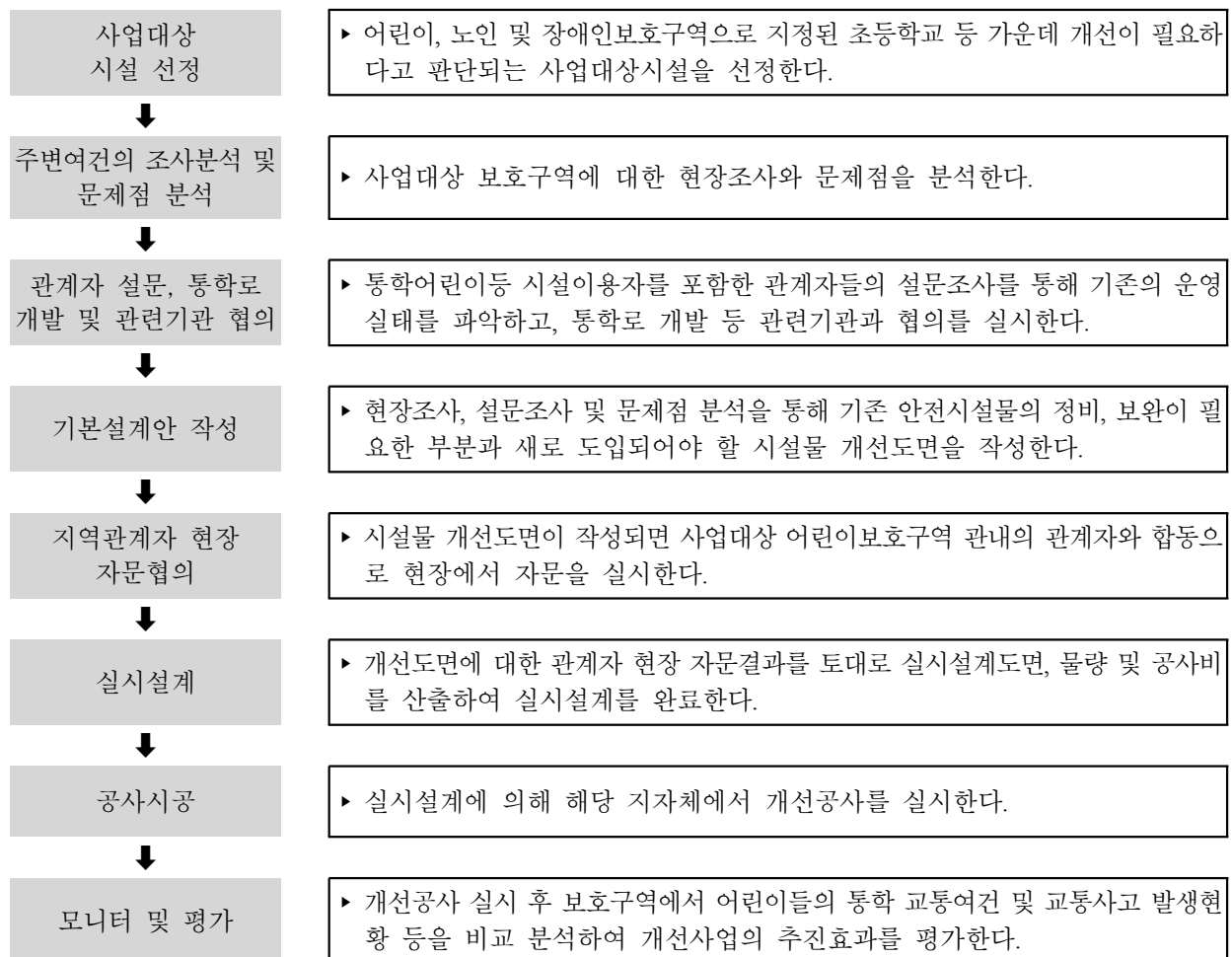
- 3.1 보호구역 개선사업 절차 및 현황
- 3.2 보호구역 대상별 시설우선순위 검토
- 3.3 보호구역의 관리

3.1 보호구역 개선사업 절차 및 현황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은 지정 이후 개선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교통안전시설이나 보도 및 도로부속물 등이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보호구역의 종류나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도로의 폭, 도로종류 등 개별 지점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3.1.1 개선사업 추진절차

우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대상 지점을 선정 후, 둘째, 현장 및 관계자조사를 통해 기존 보호구역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보호구역에 들어갈 시설물 현황 및 개선도면을 작성하고, 넷째, 보호구역 관내의 관계자와 합동으로 현장자문을 실시한다. 다섯째, 현장자문 결과를 통해 실시설계를 거쳐 여섯째, 개선공사를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개선공사 실시 후에 보호구역에서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비교 분석하여 개선사업의 추진효과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절차는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절차

3.1.2 초등학교등 사업대상 시설의 선정

사업대상 시설은 발주청(도로관리청)이 각 지방경찰청 해당 자치단체 및 관할 교육청등과 협의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시설 중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선정한다.

3.1.3 기초조사 : 주변여건의 조사 분석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일로서 다음 <표 3-1>의 사항들에 대해 조사된 자료와 데이터를 기준으로 검토·분석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다.

<표 3-1> 보호구역 주변여건 조사 항목 및 내용

연번	항 목	내 용
1	토지이용 현황	주변도로의 기능, 교통유발시설의 분포
2	도로특성	지형, 지물 및 각 진입로에 대한 설계속도, 도로 폭원, 기하구조와 포장, 배수, 조명시설, 식재상황 등
3	교통특성	방향별, 차종별(대형차 혼입율 등) 등하교시 교통량, 평균 속도, 통학노선, 주차, 교통규제상황
4	보행환경	상가 및 광고물, 장애물, 보도유무, 어린이 통학 형태, 보행습관, 도로횡단 습성 등
5	기존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횡단보도(녹색시간 포함),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등
6	교통사고	사고원인 및 사고유형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대상지점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이 때 보호시설 주변가로 차량 통행상의 문제점 및 해당 보호시설 이용자의 이동편의성이 주요 고려사항이 된다.



[그림 3.2] 기초조사 실시 사례

발주청(도로관리청)은 기초조사 자료를 토대로 현황도 및 문제점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 축척은 1:1,000 이하로 한다. 한편, 기초조사 결과는 CD 등으로 작성하여 향후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보관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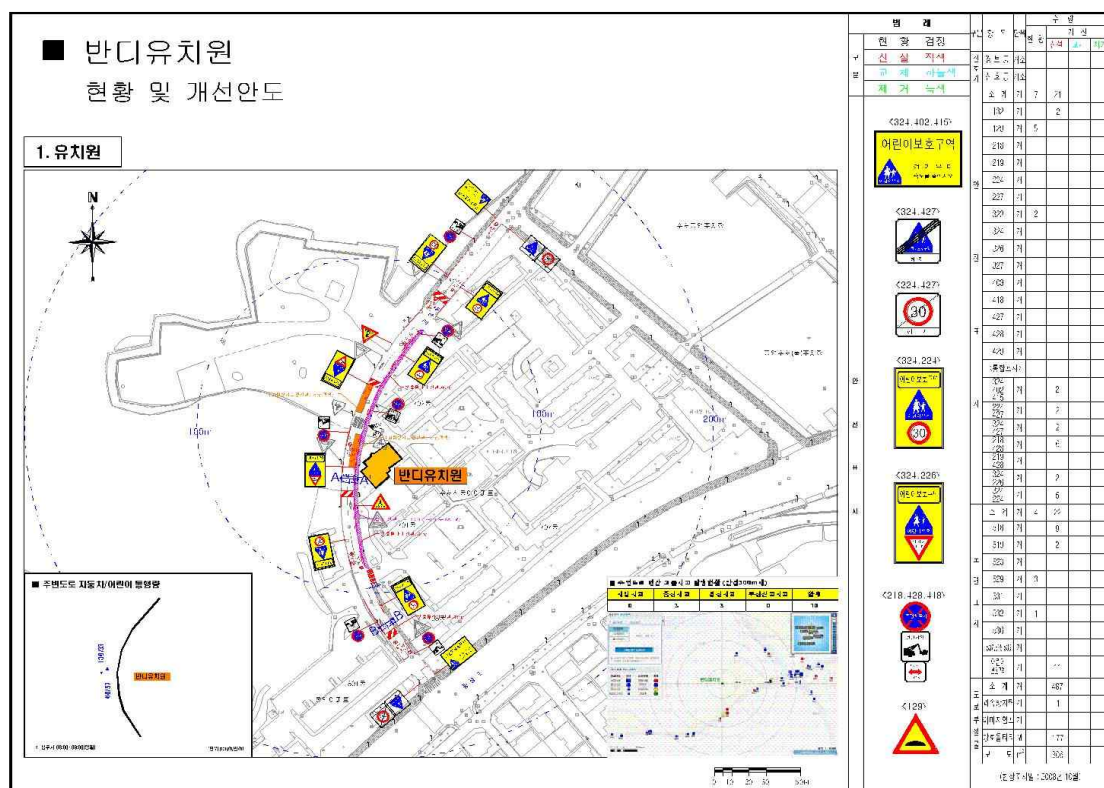
3.1.4 관계자 설문, 통학로 개발 및 관련기관 협의

발주청은 담당교사,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자, 교통경찰,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부록 2>의 설문조사표에 의해 설문을 실시한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시 해당학교와 협의하여 특별활동시간을 마련, 학교주변 지도상에 분단별(5~10명)로 개인별 통학로를 표기하게 하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설계자 입장에서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시설이용자의 의사 표현이 곤란한 유치원·보육시설·장애인생활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운영자를 통해 도로별 통학(이동)로를 조사할 수 있다.

분석결과 가장 안전한 통학로를 설정하여 설계시 반영하여야 하며, 또 도시계획 및 도로건설계획과 각종 공사계획 등은 지자체나 도로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조사한 후 설계와 시공절차상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5 기본설계도면 작성

우선 기존시설물을 파악하기 위한 현황도는 대상학교 반경 300m이내의 도면 1부와 학교 반경 약 100~150m(학교의 면적 등을 감안) 근접부분을 확대한 도면 1부를 작도한다.



[그림 3.3] 기본설계도 작성 예시

반경 300m 이내의 도면에는 기존의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시설을 (별표2) 시설물 표기범례에 따라 표시하고, 반경 100~150m 이내의 확대도면에는 위 시설물외에 학교주변 도로 및 보도의 폭과 주·정차시설 및 현화, 노상장애(적치)물, 시인성을 저해하는 주요 광고물 등 개선에 필요한 부

분을 상세히 표시한다.

현황도에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번호로 표시(①,②,③ 등)하고 『개선방안』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시설물(새로 적용되는 시설은 명칭)을 색(color)으로 도시한다.

개선이 필요한 사유를 도면에 표기하고 시설물 중 상세도면이 필요한 곳은 별도의 도면을 작성한다.

3.1.6 지역관계자 현장 자문협의

발주청(도로관리청)은 보호구역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도면에 대한 지역 관계자의 이해와 건설적인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게 되는데 자문협의에 참석하는 범위 및 방법은 다음의 <표 3-2>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표 3-2> 현장자문회의 참석범위 및 실시방법

항 목	내 용
참석범위	대상학교 담당교사, 학부모 대표, 주민대표, 관할경찰서(또는 파출소)담당자, 지방의회,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 관계자, 긴급 차량운영부서(병원, 소방서 등)
실시방법	기본설계도면이 완성되면 관할 경찰서, 지자체와 협의, 해당 초등학교나 일정장소에서 개선에 따른 사업설명 및 합동 현장 답사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또 필요시는 동사무소 등에 사업 내용을 게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 받아 실시설계에 반영



[그림 3.4] 주민설명회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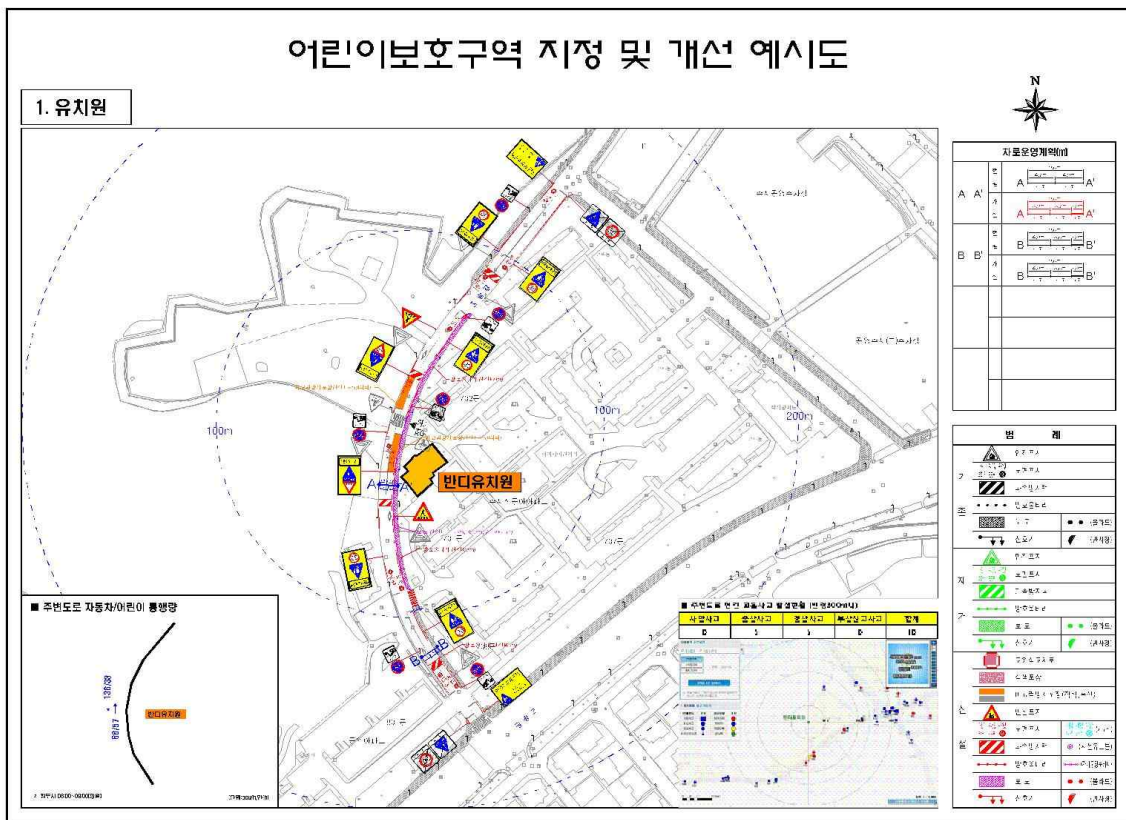
[그림 3.5] 관계기관 협의 사례

3.1.7 실시설계

기본설계도면에 대한 지역관계자의 현장 자문협의 결과,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하며, 설계도면, 공사비산출내역서, 설계보고서를 작성한다.

<표 3-3> 실시설계 항목 및 내용

항 목	내 용
설계도면	지역관계자의 현장 자문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도면상에 소요자재 물량표를 기재한다.
공사비 산출내역서	공사비산출은 원가계산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인건비는 정부 노임 단가와 공종별 품셈자료 등을, 사용자재는 규격, 단가, 수량 기준으로, 자재단가는 각종 물가자료와 비교견적 등을 활용한 일위대가표를 첨부한다.
설계보고서	설계보고서의 내용에는 사업개요와 각 대상학교의 지점별 개선내용, 공사에 필요한 사양과 시방 및 일정계획 등을 포함한다.



[그림 3.6] 실시설계 도면예시

3.1.8 공사실시

실시설계에 따라 해당 지자체별로 공사를 실시하며 가급적 해당지역의 교통 혼잡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공휴일, 방학기간 등)을 선정, 시행토록 한다. 또한 관련 도로관리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당해 지역에 대한 도로공사나 도로확장 또는 도색작업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급적 동시에 공사가 시행되어 2중 공사에 따른 비용낭비를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3.1.9 개선효과 분석 및 평가

공사 준공 시에는 가급적 지역기관장, 언론사,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여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토록 하여 향후 개선사업 예산확보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한다. 또한 개선전후의 효과 등을 소형 팸플릿으로 제작하여 주민들에 홍보하며 사업완료 이후 파손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주민신고 등을 유도한다. 공사완료 후 주기적으로 지역관계자 및 관련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고, 개선사업의 전 과정을 자료로 종합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여 둔다.

개선효과 분석은 통과 교통량 감소정도, 자동차 속도 저감 정도,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 정도 등의 내용이며, 지역 주민,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만족도 및 각종 평가 요소에 대한 개선전후를 비교한다.

3.2 보호구역 대상별 시설우선순위 검토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할 때는 해당시설의 이용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당 지역을 차량을 통해 이용 또는 통과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호구역임을 인지하고 최대한 주의 운전하도록 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선사업의 시행 주체는 기초조사를 통해 수집한 토지이용현황, 도로특성, 교통특성, 보행환경, 기존시설, 교통사고현황 등 자료를 근거로 하여 경찰, 녹색어머니회, 시설의 운영자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보호구역 해당시설 이용자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행동특성을 이해하고, 보호구역 대상 시설별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 환경과 어울리는 최적의 개선안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3.2.1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관련 특성과 시설

어린이는 한 가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주변의 것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친구들과 놀이에 열중하고 있을 때에는 차량이 가까이 근접하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또한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행동이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린이의 돌출행동과 인지·반응 능력이 부족함을 이해하고 우선시설을 정하여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차 뒤에서 놀다가 나는 사고
2. 뛰어서 무단횡단하다 나는 사고

3.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뛰어가다 나는 사고
4.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뛰어가다 나는 사고
5.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다 나는 사고
6.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다 나는 사고
7. 버스에서 내려 버스 앞 또는 뒤로 뛰어 건너다 나는 사고
8.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나는 사고

위의 교통사고 주요 유형을 고려할 때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차량감속 유도시설	▶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신호·속도 단속카메라 ▶ 교통안전표지 - 보호구역 시점표지, 속도제한표지 ▶ 교통노면표시 -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천천히’ 등 - 지그재그선, 속도제한 30 표시
무단횡단 방지시설	▶ 보행공간 확보(보도조성) ※ 일방통행제 검토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 ▶ 보행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횡단보도
주·정차 금지시설	▶ 주·정차 금지 ▶ 차량의 보도침범 예방시설(블라드) ▶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

[그림 3.7] 어린이 보호구역내 우선 고려할 시설

3.2.2 노인의 교통관련 특성과 시설

노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이전의 상태와 다른 고령자의 여러 가지 신체적 특성이 나타난다.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시설 개선 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고려해야 할 주요 고령자의 교통관련 특성은 아래와 같다.

1. 시력

- 동체시력 저하 : 동체시력은 움직이는 사물을 보거나 움직이면서 사물을 보는 능력을 말하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지시력 이상으로 저하된다.
- 시야의 변화 : 고령자는 시력뿐만 아니라 시야도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주변의 상황변화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
- 암순응 저하 : 암순응이라는 것은 밝은 곳에서 터널같은 어두운 곳에 진입했을 때, 처음에 달 보이지 않다가 점점 잘 보이는 상태로 되는 것을 말하며 고령자의 경우 젊은 사람과 비교하여

암순응 반응이 늦다.

- 현혹의 증대 : 야간에 차량의 불빛이 직접 눈에 비춰졌을 때 눈부심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는 상태를 현혹이라 한다. 고령자의 경우 현혹에 빠지기 쉽다.

2. 반사적 반응

비교적 단순한 작업에 대해서는 고령자와 젊은 층의 반응시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고령자의 반응시간은 빨라지거나 혹은 느려지거나 하는 것이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

3. 판단속도와 정확성

위에서 언급한 반사적 반응과는 달리 복잡한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인지·판단·동작의 속도나 정확성이 저하된다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정보를 포착하여 판단을 하고 행동 하는 ‘선택 반응시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길어지게 된다.

4. 주의력 배분과 집중력의 저하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때에는 모든 작업에 균등하게 신경을 써야만 한다. 이것을 주의력 배분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적절하게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또는 적절하게 주의를 배분시켜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수집하고 대응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위의 고령자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때 노인보호구역 내 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차량감속 유도시설	▶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신호·속도 단속카메라 ▶ 교통안전표지 - 보호구역 시점표지, 속도제한표지 ▶ 교통노면표지 - ‘노인보호구역’, ‘일시정지’, ‘천천히’ 등 - 지그재그선, 속도제한 30 표시
보·차 분리시설	▶ 보행공간 확보(보도조성) ※ 일방통행제 검토 ▶ 보도의 평탄성 최대한 유지(고원식 횡단보도) ▶ 보행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횡단보도
보도의 편의성 증대	▶ 연석경사로 및 턱낮추기 단차 최소화 ▶ 유효보도폭 최대한 확보 ▶ 보도의 중단경사, 횡단경사 최소화

[그림 3.8] 노인보호구역내 우선 고려할 시설

3.2.3 장애인의 교통관련 특성과 시설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의 종류는 위의 규정에서와 같이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두 가지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3-4>과 같다.

<표 3-4> 장애인의 분류 목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 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인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과는 달리 대 상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의 종류에 따라 시설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한다.

장애 종류별 시설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상인과 비교하여 통행 시 필요한 능력 차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주요 장애별 통행능력 차이는 아래의 <표 3-5>과 같다.

<표 3-5> 장애종류별 통행시 필요한 능력

통행시 필요한 능력		휠체어사용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지능장애자
운동능력	보행능력	×	△	△	△
정보수집능력	시각능력	○	×	○	△
	청각능력	○	○	×	△
지적판단능력	판단력	○	△	△	×

주 : ○ : 정상인과 동일한 능력

△ : 정상인과 차이는 없지만, 다른 능력 장애의 영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상인보다 능력이 약하다.

× : 정상인보다 능력이 부족하다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할 때는 아래의 [그림 3.9]에서 제시한 기본시설 외에는 반드시 대상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와 충분한 협의와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범위의 기존시설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하여야 한다.

장애종류별 통행 특성을 고려할 때 장애인보호구역내 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단, 장애 종류별로 특화시설은 위에서 제시한 장애종류별 통행능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자의 경우는 점자블록, 지체장애자의 경우는 보도의 중·횡단경사 완화 등이다.

차량감속 유도시설	▶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신호·속도 단속카메라 ▶ 교통안전표지 - 보호구역 시점표지, 속도제한표지 ▶ 교통노면표시 - ‘노인보호구역’, ‘일시정지’, ‘천천히’ 등 - 지그재그선, 속도제한 30 표시
보도의 편의성 증대	▶ 연석경사로 및 턱낮추기 단차 최소화 ▶ 유효보도폭 최대한 확보 ▶ 보도의 종단경사, 횡단경사 최소화
장애인 안전시설	※ 장애인 안전시설의 적용은 장애종류별로 선택해야 한다. ▶ 점자블록 ▶ 음향신호기 ▶ 차량진입방지용 말뚝(규격준수) ▶ 유효보도폭 1.5미터 이하인 경우 : 휠체어 교행구역 ▶ 경사진 보도가 연속되는 경우 : 휴식공간(참)

[그림 3.9] 장애인보호구역내 우선 고려할 시설

3.3 보호구역의 관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과 본 지침에 의한 보호구역 지정과 개선사업을 통해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지속적으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만 최초 지정과 개선에 의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장 등은 보호구역주변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범위의 적정성 여부, 시설의 오손·훼손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시장 등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또한,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과 현황을 작성·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3.1 보호구역 지정·관리 계획

시장 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시·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어린이 보호구역), 별지 제5호서식(노인 보호구역), 별지 제6호서식(장애인 보호구역)에 의하며 지정·관리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수
2.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3.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4.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종류별·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 (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다)

시장 등은 지정·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관계자
2. 도로관리청 관계자
3.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청 관계자
4. 노인복지시설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담당 공무원 등 시장등이 지정하는 사람

3.3.2 보호구역 관리카드 작성

시장 등은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보호구역 관리카드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3.3.3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 작성

시장 등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시·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4 보호구역 지정 범위의 적정성 검토

최초 보호구역 지정 후 주변 교통상황의 변화와 학군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호구역 이용자의 통행 행태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적정범위로 조정하여야 한다. 지정 범위의 변경과 이와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본 지침에서 정한 지정과 개선사업 절차에 의한다. 보호구역 지정범위를 재검토해야 하는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학군 변경(개교, 폐교 등)
2. APT등 대규모 주거시설의 입주와 이로 인한 학군 조정
3. 보호구역 주변에 도로의 신설·확장으로 인한 교통상황 변화
4. 횡단보도 신설·이설, 일방통행제 시행 등 교통규제 변화 등

3.3.5 보호구역 시설의 관리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이 훼손되거나 손괴(損壞)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 보수 또는 재설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노면표시의 경우는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의 기준인 <표 3-6>에 의한 재도색 기준 이상의 반사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표 3-6> 도로형 노면표시 반사성능

단위 : mcd/m²·Lux

입사각	관찰각	구 분	반 사 성 능					비 고
			백 색		황 색		청 색 (백색의 8%)	
88.76°	1.05°	설치시	130		90		6	기준
		재도색 시기	도시내	외곽	도시내	외곽		
			50	80	30	50	2	권장

※ 「설치시」는 노면표시 설치 직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교통 또는 도로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보호구역내 시설기준

- 4.1 교통안전표지
- 4.2 노면표시
- 4.3 무인 교통단속 장비
- 4.4 도로 적색포장
- 4.5 과속 방지턱
- 4.6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 4.7 횡단 시설
- 4.8 보행자작동 신호기

4.1 교통안전표지

보호구역의 시점 또는 구역 내의 교통안전표지는 노면표시와 병행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인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인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적절한 지주형식을 도입하여야 하며, 노면표시만으로 보호구역과 관련 규제·지시 내용을 안내 할 수 있다.

4.1.1 규칙에서 정한 교통안전시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보호구역내에는 아래의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II. 개별기준의 제133호·제324호
2. 노인 보호구역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6 II. 개별기준의 제323호
3. 장애인 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II. 개별기준의 제324호의2

<표 4-1> 교통안전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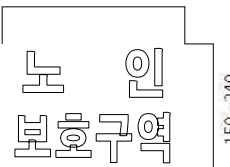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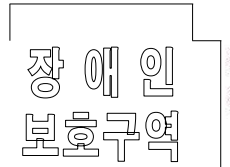
표지형식				
표지번호	133(주의)	323(지시)	324(지시)	324-2(지시)
표지 명	어린이보호	노인보호	어린이보호	장애인보호

어린이보호구역 주의표지(133)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시점표지의 시인성 확보가 보호구역 전방에서 불가능한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실제 보호구역 시점을 적절히 정하였고 지시표지가 설치된 경우 설치할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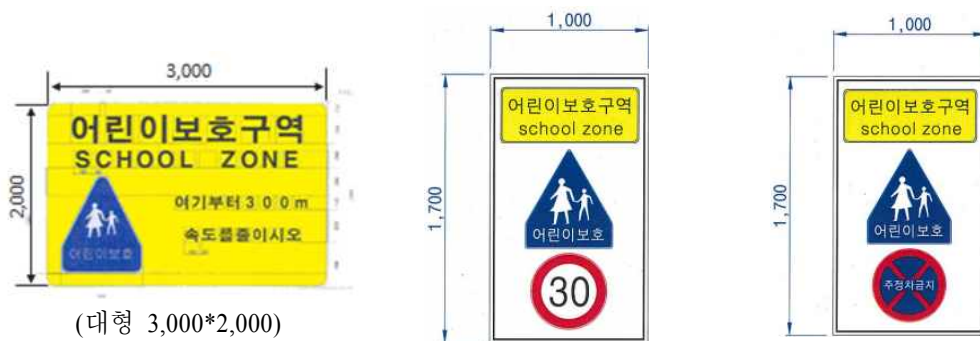
지시표지인 노인보호(323) 등도 보호구역과 접속하는 이면도로가 많은 경우 모든 접속도로에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표지의 과다와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아 시인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필수 설치장소 외에는 설치를 생략하고 대신 노면표시를 활용하여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였음을 안내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아래 노면표시의 설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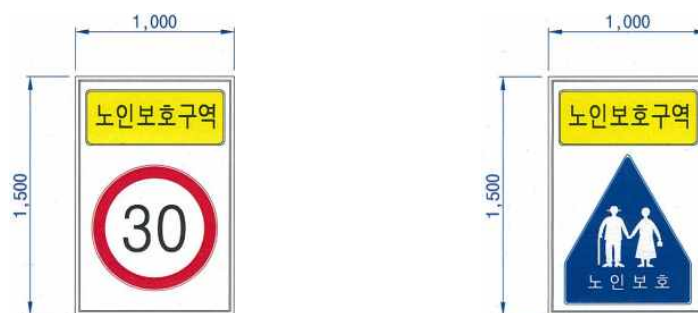
<표 4-2> 노면표시의 설치

표지 형식			
표시 번호	536	536-2	536-3
표시 명	어린이보호	노인보호	장애인보호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을 운영하면서 관련 지침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 - 2004년, 경찰청’과 ‘노인보호구역 설치관리 지침 - 2007년, 경찰청’에서는 보호구역내 표지가 과다하게 설치되는 문제점과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통합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림 4.1]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



[그림 4.2] 기존 노인보호구역 통합표지

2004년 1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이 제정된 후 현재까지 동 편람을 통해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편람에 규정되지 않은 여러 시설물과 교통안전표지의 필요성에 따라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의 표지가 각 개선사업 주체별로 도안되어 현장에 적용되어 왔다.

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추진지침’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통합표지에 대한 형식, 도안, 크기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와 어울리는 통일된 형태의 보호구역내 각종 통합표지의 형식을 정하였다.

본 지침에서 개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통합표지를 황색바탕으로 특화
2. 지역적으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표지를 통일 - 형식, 규격
3. 대형표지(3m * 2m)는 속도제한이 없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에 제한적으로 설치
4. 축소형(70%) 표지 적용기준 제시- 집산도로, 국지도로

4.1.2 시점표지

보호구역의 시점에는 아래의 형식에 의한 가로형 통합표지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로형 통합표지의 지주는 내민식으로 하며 지주의 위치는 보호구역 시점의 도로우측이다. 주변의 상황 상 지주의 설치장소가 없고 내민식으로 설치시 시인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세로형 통합표지를 정주식으로 설치하여도 된다.

대형표지(3m*2m)는 속도제한이 없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에 제한적으로 설치하되 기본형 가로형통합표지(1.5m*1m)와 노면표시 만으로 보호구역의 시점을 운전자가 인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형표지(3m*2m)의 형식은 가로형통합표지(1.5m*1m)와 같으며 크기만 확대하여 적용한다.

4.1.3 가로형 통합표지(시점에만 설치)

보호구역 구간에 속도제한(30Km/h)을 할 경우 어린이보호(324) 또는 노인보호, 장애인보호 지시표지를 제한속도 표지(30)로 도안을 바꾸어 설치하여도 된다. 본 표지는 축소설치를 하지 말아야 하며 보호구역 구간 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기존)



(개선)



※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30으로 도안변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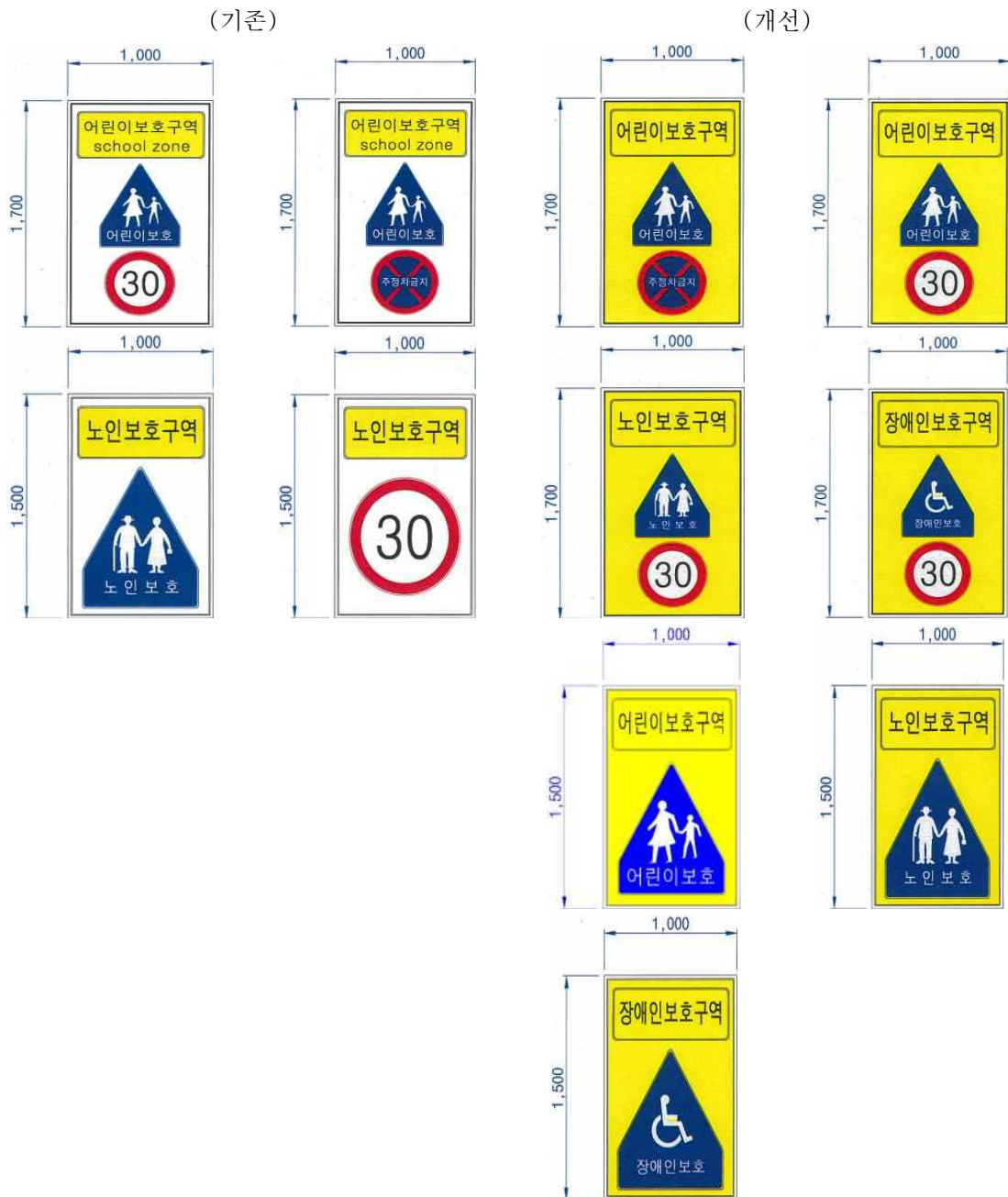
[그림 4.3] 가로형 통합표지 기존·개선 비교

4.1.4 세로형 통합표지(시점 또는 구역내에 설치)

세로형 통합표지는 보호구역의 시점 또는 보호구역내에 필요한 경우 설치하며, 지주의 기본형식은 정주식으로 한다. 기본규격은 가로 1,000Cm * 세로 1,700으로 하되 70%로 축소하여 700Cm * 1,190Cm로 할 수 있다. 이면도로(국지도로, 집산도로)에는 축소형 표지를 설치하며, 그 외의 도로에도 시인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축소형 설치가 가능하다. 통합표지 내 교통안전표지의 조합은 보호구역의 규제 또는 지시에 따른 내용을 적절히 반영한다.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주정차금지, 어린이보호+서행, 어린이보호+보조표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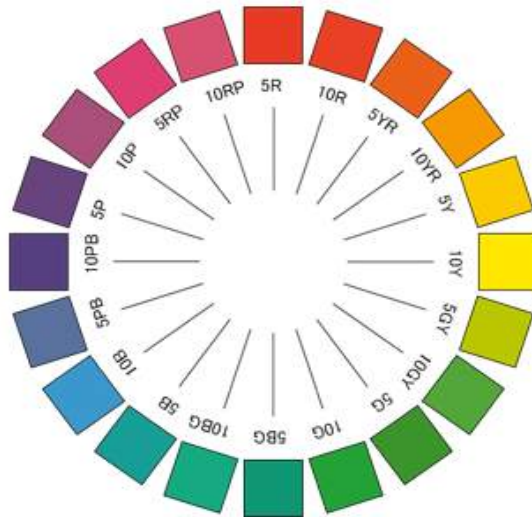
통합표지의 구성상 교통안전표지의 2개 도안이 불필요한 경우 세로규격을 축소하여 ‘○○○보호구역’ 문자도안과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만으로 도안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로 규격은 1,500Cm이다. 이 경우에도 규격을 축소하여 700Cm * 1,050Cm로 할 수 있다.



[그림 4.4] 세로형 통합표지 기존·개선 비교

4.1.5 통합표지 바탕색

통합표지의 바탕색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의표지 바탕색과 일치하게 도안하여야 하며, 통합표지에 들어가는 개별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한 색상과 형식을 따른다.



<표 4-3> 통합표지 바탕색

색이름	색기호
진한빨강	7.5R 3/10
노란주황	10YR 7/14
진한초록	2.5G 3/6
검은남색	7.5PB 2/2
하양	N 9.25
검정	N 1.5

※ 한국산업규격(KS A 0062, KS M 6020) 색 기준임

4.1.6 보호구역 내 개별표지 설치기준

보호구역내의 교통안전표지는 가능한 한 통합표지로 설치하여, 표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색상과 형식만으로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합표지 외에 보호구역 구간 내에 교통안전표지를 설치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개별 기준에 의한다. 이때에도 이면도로(국지도로, 집산도로)에는 70% 축소형 표지의 설치가 가능하다.

시 설 예 고 표 지	
 132 횡단보도	○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치 - 포장도로의 교차로에 신호기가 없을 때 - 포장도로의 단일로에 신호기가 없을 때 - 비포장도로의 교차로 또는 단일로(단, 신호기 설치여부와 무관함) ○ 횡단보도 전방 50~120m 범위 내, 도로우측에 설치 ○ 횡단보도가 있으나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포장도로에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 권장

 133 어린이보호	○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가 특별히 요청되는 통행로나 횡단보도나 있는 경우에 설치 ○ 어린이 보호지점 또는 구역의 전방 50~200m 범위 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학교 및 통행로에 있어서는 학교의 주출입구로부터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에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어린이보호구역(429), 일자(404), 시간(405) 등 보조표지와 함께 병설 권장 ○ 보호일자와 시간에 따라 적합한 지주형태를 선택하여 설치 권장
 129 과속방지턱	○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지점의 전방 30~200m에 설치

통행금지

 201 통행금지	○ 보행자 및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에 설치 ○ 통행금지의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 설치 ○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통행금지가 규제되는 도로 전방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입구에 통행금지 규제표지와 거리 및 기간, 금지이유 등을 고시 ○ 통행금지 지역에 차량이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
---	--

통행제한

 221 차높이제한	○ 차높이 통행제한이 필요한 장소나 지점에 설치 ○ 차도의 노면으로부터 상단 여유 폭이 4.7m 미만인 구조물에 설치하되, 당해 구조물 높이에서 20cm를 뺀 수치를 표시 ○ 차량진행방향의 도로 우측 또는 해당 도로구조물의 저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우회로 전방에 차 높이 제한의 예고와 우회로를 함께 안내
 224 최고속도제한	○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차량 진행방향의 도로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한해야 할 구역 또는 구간이 길 경우에는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음 (시가지도로-200m, 지방도로-400m, 자동차전용도로-800m 간격으로 설치) ○ 제한속도는 노면상태, 갓길상태, 구배, 선행 및 시거, 노면의 조건, 위험요소, 85번째 주행속도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름
 226 서행	○ 서행하여야 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서행 노면표시와 함께 사용 ○ 구간이 30m 이상일 경우 시작과 끝 지점에 보조표지 설치 ○ 구간이 100m 이상일 경우 100m 간격으로 중복설치 ○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의표지와 함께 설치해서는 안 됨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통행제한		
 227 일시정지	○ 차량이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교차로나 기타 필요한 장소에 설치 ○ 일시정지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 ○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28 양보	○ 차량이 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에 설치 ○ 양보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 ○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금지사항		
 211 진입금지	 212 직진금지	○ 차량의 진입 또는 직진을 금지해야 할 장소에 설치 ○ 진입금지의 이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 ○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13 우회전 금지	 214 좌회전 금지	○ 차량이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금지해야 할 지점에 설치 ○ 차량의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
 218 정차·주차금지	○ 차량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 도로 구간이나 장소에 설치 ○ 구간의 시작(402, 417) 및 끝(419) 또는 시간(405, 406) 등의 보조표지 함께 부착 ○ 정차·주차 금지 장소 -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단, 노상주차장 제외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 단,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한함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 구간 내에서 시가지도로는 200m, 지방도로는 300m, 자동차전용도로는 500m 간격으로 중복설치	
 219 주차금지	○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 도로 구간이나 장소에 설치 ○ 구간의 시작(402, 417) 및 끝(419) 또는 시간(405, 406) 등의 보조표지 함께 부착 ○ 주차 금지 장소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은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 구간 내에서 시가지도로는 200m, 지방도로는 300m, 자동차전용도로는 500m 간격으로 중복설치	

금 지 사 항	
 230 보행자보행금지	○ 보행자의 보행을 금지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 및 장소 내에 필요한 지점에 설치 ○ 도로를 따라 보행자 보행을 금지할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구간의 시작 또는 끝 중의 보조표지 부착

도 로 지 정	
 301 자동차전용도로	○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 및 기타 필요한 구간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에 설치 ○ 차량의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용도로 표지를 시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도로로 진입할 우려가 있는 도로의 우측에 회전금지(213, 214) 규제표지 설치
 302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에 설치 ○ 차량의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03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에 설치 ○ 진행방향의 도로 양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17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중 자전거 보행자 통행구분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또는 끝 보조표지를 부착 ○ 통행구분 방법에 따라 도안을 바꿀 수 있음

일 방 통 행 지 시	
 326	○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이나 장소에 설치 ○ 구간이 길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병설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양측에 설치
 327	
 328	

보 행 자 지 시	
 321 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 전용도로의 입구 또는 기타 필요한 구간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병설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중복하여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보행자지시	
 322 횡단보도	○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지점에 설치 ○ 횡단보도를 설치한 곳에서 필요한 지점이나 장소에 설치 ○ 보행자 및 차량의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 설치 ○ 육교, 지하도부근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음 ○ 단,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행자의 안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323 노인보호 (노인보호 구역안)  324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 구역안)  324-2 장애인보호 (장애인보호구역안)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도로양측에 설치 ○ 노인복지회관 등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학교 및 유치원 등에서 노인 및 어린이 통행로가 있을 경우에는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일정구간에 설치 ○ 노인보호구역, 학교, 유치원 등에서 노인 및 어린이 통행로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조사 후 전문가의 설계를 거쳐 권역설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이 접치는 장소에서는 보호구역개선사업 업무지침을 따름
 303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에 설치 ○ 진행방향의 도로 양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17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중 자전거 보행자 통행구분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또는 끝 보조표지를 부착 ○ 통행구분 방법에 따라 도안을 바꿀 수 있음

기타지시	
 319 주차장	○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에 설치 ○ 필요한 경우에는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병설
 320 자전거주차장	○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에 설치 ○ 필요한 경우에는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병설

거리, 구역, 구간(보조)	
 401 거 리  402 거 리  425 거 리	○ 본 표지가 표시하는 시설물 또는 장소의 시작점, 구간내 또는 끝점까지의 거리를 나타 내고자 할 때 함께 설치

거리, 구역, 구간(보조)	
시내전역 403 구역 구간시작 ← 200m 417 구간시작 구간내 ↔ 400m 418 구간내 구간끝 → 600m 419 구간끝	○ 본 표지가 표시하는 내용의 영향이 미치는 구역 또는 구간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설치

일자, 시간(보조)	
일요일·공휴일제외 404 일자	○ 지정된 요일 또는 일자에 한해서 본 표지의 내용이 적용될 경우에 보조표지 함께 설치
08:00~20:00 405 시간 1시간 이내 차통수있음 406 시간 적신호시 407 신호등화 상태	○ 지정 및 특정 시간 또는 기간에 한해서 본표지의 내용이 적용될 경우에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 ○ 지정 및 특정시간이 24시간(1일)인 경우에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음

본 표 지 설 명 (총 12개)	
앞에 우선도로 408 전방우선도로	○ 우선도로와 교차하는 부도로의 규제표지에 병설
안전속도 30 409 안전속도 속도를 줄이시오 415 통행주의	○ 차량이 안전한 속도로 감속하여 통행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주의표지에 설치
차로엄수 412 교통규제	○ 차량이 안전한 속도로 감속하여 통행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주의표지에 설치
전차지마시오 413 통행규제 승용차에 한함 414 차량한정	○ 금지 등의 규제표지와 함께 설치
→ 420 우방향 ← 421 좌방향	○ 규제, 지시표지의 내용이 적용되는 노선,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방향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 본 표지에 부착하여 설치
↑ 전방 50M 422 전방	

4.1.7 해제 표지

보호구역의 종점부에 설치한다. 해제표지(427)는 특정 규제 또는 지시표지가 해제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도 보호구역내 표지가 축소규격(70%)으로 설치되었으면 해제관련 표지도 동일 축소비율로 축소하여 설치한다.

(어린이 등)보호구역과 속도제한을 동시에 해제하는 경우는 속도제한 해제표지와 (어린이 등)보호구역 해제표지를 병설한다.

속도 제한된 (어린이 등)보호구역의 종점부에 원래의 도로 제한속도를 운전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속도제한 전 원래의 속도제한 표지와 (어린이 등)보호구역 해제표지를 병설한다.



[그림 4.5] (어린이)보호구역만 해제하는 경우



[그림 4.6] (어린이)보호구역과 속도제한을 해제하는 경우



[그림 4.7]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와 도로 원래의 속도를 안내하는 경우

4.2 노면표시

시점부와 주 출입구 주변,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의 주 횡단보도 전방에 설치하며 교통안전표지 설치 공간 및 시인성 확보 문제로 보호구역임을 교통안전표지로 안내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주로 보·차 혼용도로)의 경우에는 속도제한 노면표시(어린이보호구역안)와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노면표시만으로 보호구역의 시점을 안내할 수 있다.

4.2.1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내 속도제한 노면표시

시점부에 차로별로 설치하며 규제된 제한속도 안내와 보호구역임을 동시에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노면표시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 의한 일련번호 536호, 536-2호, 536-3호와 함께 설치한다. 규격은 아래 [그림4.8]을 따라 가로200cm, 세로 280cm로 설치하여야 하며 축소 또는 확대규격은 적용하지 않는다.

518	속도제한표시 (어린이보호구역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최고속도를 표시하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
-----	----------------------	--	--------------------------	---------------

[그림 4.8] 속도제한 노면표시(어린이보호구역안) 노면표시 규격

현장에 적용된 사례는 아래 사진과 같으며 속도제한을 실시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경우에도 도로 원래의 속도를 표시한 속도제한 노면표시(어린이보호구역안)을 설치한다. 이때 색상과 도안은 동일하며 제한된 속도표시 숫자만 달리한다.



[그림 4.9] 기존 노면표시 설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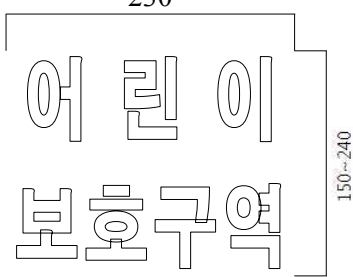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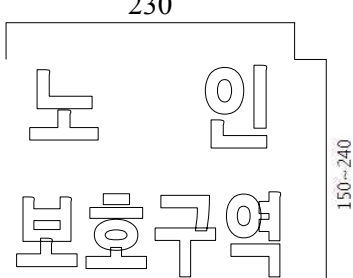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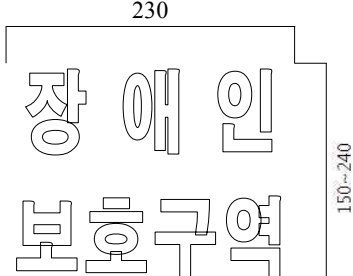
[그림 4.10] 속도제한 노면표시(어린이보호구역안) 시공사례



[그림 4.11] 속도제한을 하지 않는 구간의 보호구역 시점 노면표시

4.2.2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노면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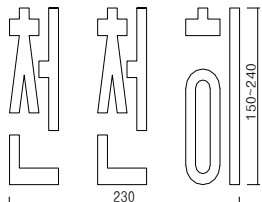
시점부에 차로별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시인성을 고려하여 보호구역내에 적절히 배치하여 중복 설치하되 주 출입문 주변 횡단보도 전방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다. 이때 횡단보도와 이격거리는 20미터~80미터로 한다. 중복 설치 시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노면표시 간 이격거리는 가능한 한 1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 의한 일련번호 536호, 536-2호, 536-3호의 규격과 형식을 변형하지 말아야 한다.

536	어린이보호 구역 표시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구역임을 표시하 는 것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 가 필요한 통행로로서, 어 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
536의2	노인 보호 구역 표시		노인보호구역임을 표 시하는 것	노인의 보호가 필요한 통 행로로서, 노인보호구역으 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
536의3	장애인보호 구역 표시		장애인보호구역임을 표시하는 것	장애인의 보호가 필요한 통 행로로서, 장애인보호구역 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

[그림 4.12]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노면표시 규격

4.2.3 서행(천천히) 노면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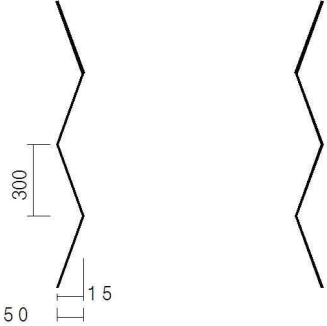
보호구역내 특별히 교통안전을 위한 서행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반드시 제한속도가 30Km/h이하로 설정된 구간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30** 교통안전표지와 **30** 노면표시만으로 충분히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어려운 장소에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519	서행 표시		차가 서행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	차가 서행하여야 할 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
-----	----------	---	-------------------------	----------------------------

[그림 4.13] 천천히(서행) 노면표시 규격

4.2.4 서행(지그재그)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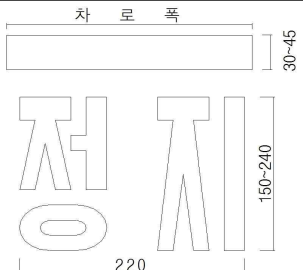
보호구역내 차가 서행 하여야 할 장소에 길 가장자리 구역선을 지그재그 선으로 설치한다. 주·정차가 금지된 황색실선 구간을 [그림4.14]의 규격에 의하여 지그재그 선으로 설치한다. 정차가 허용된 황색 점선구간에서는 설치하지 않는다. 특히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전방 또는 주 출입문 주변에는 적극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520	서행 표시		차가 서행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등 차가 서 행하여야 할 장소에서 보행 자를 보호하기 위해 길가장 자리 구역선이나 정차·주차 금지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
-----	----------	---	-------------------------	---

[그림 4.14] 서행표시(지그재그선) 노면표시 규격

4.2.5 일시정지 노면표시

차량 진출입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보도 간 연결 횡단보도 전방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하도록 설치한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지점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특히, 중앙선이 없는 보·차 혼용도로의 경우 도로의 교차지점 전방에 반드시 설치한다.

521	일시정지 표시		차가 일시 정지하여 야 할 것을 표시하 는 것	교차로, 횡단보도, 철길건널 목 등 차가 일시 정지하여 야 할 장소의 2미터 내지 3 미터 지점에 설치
-----	------------	---	---------------------------------	--

[그림 4.15] 일시정지 노면표시 규격

4.3 무인 교통단속 장비

무인 교통단속 장비란 과속 및 신호위반, 주·정차 등 운전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전자, 제어, 통신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단속하는 장비로써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 교차로 다기능 단속 카메라(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 버스 전용차로 위반 감시카메라, 주·정차 위반 감시카메라 등이 있다.

4.3.1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필요성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교통안전시설에 포함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시 일반 도로에서 보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가 강화된 만큼 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법규 준수가 강조되고 있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사고 예방 효과는 카메라가 설치된 해당 지점에서의 직접적인 사고 예방 효과 이외에도 교통법규 준수율 향상이라는 운전자 의식 변화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의 속도 제한이 준수되고, 신호를 지키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4.3.2 설치 장소

보호구역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중 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의 설치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한다.

1. 자동차의 속도·신호 등 법규위반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
2. 최근 지역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하여 교통사고다발지역이거나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곳을 선정하여 설치함
3. 보호구역내 가로 중 30km/h로 속도 제한을 하지 않는 보조간선도로 이상,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

보호구역내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한다.

1.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의 상·하부 50m 이내 지점
2. 학교 정문·후문 부근
3.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도로(국지도로) 구간 중 보행자 통행이 빈번(주 통학로)하여 주·정차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겪고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점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보호구역내 다른 지점으로 이전 설치하는 때에도 위와 같으며, 단속카메라 철주는 측주식, 내민식, 문형식 등으로 설치하고, 교차로 미관과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4.3.3 설치 절차·관리

‘교통단속처리지침(경찰청)’에 의한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설치·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다.(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 장비에 해당)

1. 경찰관서장은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신규 설치·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신규 설치 또

는 이전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두고 다음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전산입력 사항은 지체없이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 설치(이전) 예정 일시 장소
- 설치하고자 하는 기기의 종류·성능·제원 및 소요예산
- 설치(이전)의 필요성
- 설치(이전)지역 약도

2. 지방경찰청장은 경찰관청이 아닌 타 기관 단체 등에서 설치·운용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 목적의 타당성과 관리운영책임 등을 감안하여 장비의 규격·설치위치 등을 사전에 경찰청장과 협의 조정토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구입은 경찰규격서에 의하여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인지를 확인하고 구매하여야 하며, 현장에 신규 설치할 경우 장비의 실제 운영에 앞서 기능과 성능이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인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장비 성능의 정밀성 및 정확성을 유지하고,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후 연 1회 장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호구역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범죄 예방(방법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규정한 지침(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운영 및 관리지침 등)을 따른다.

CCTV를 설치하는 방법은 공청회의 개최,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3.4 무인 교통단속 표지의 규격 및 설치 방법

1. 무인 교통단속 표지 로고 및 문안

■ 글자 규격

- 서체 : 고딕체
- 글자 획의 두께 : 글자 높이의 15% 적용
- 글자 장평 : 1:0.7~1:0.9 범위

■ 판의 규격 및 설치 높이

- 가로 × 세로 : 70cm×110cm
- 보조표지판 : 70cm×25cm
- 설치 높이 : 200cm 이상
- 판의 재질 : 알루미늄판 또는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
- 판의 두께 : 알루미늄판 2.0mm, FRP 3.0mm

■ 지주의 형식 및 재료

- 단주식(정주식), 내민식, 문형식
- 재료 : 알루미늄 백판
- 기초 깊이 50cm 이상의 고정식

■ 표지의 색

- 무인 교통단속 표지의 색은 바탕 황색, 테두리는 흑색, 문자 및 기호는 흑색을 사용
- 보조표지의 색은 바탕 백색, 테두리는 흑색, 문자는 흑색을 사용
- 색채 : 황색(색번호 13538), 흑색(색번호 17038)

2. 무인 교통단속 표지 설치 방법

- 무인 교통단속 표지는 단속지점의 위치에 대한 예고와 주의환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보조표지를 둘 수 있다.
 - 과속 단속지점을 사전에 알리는 1, 2차 예고표지가 설치되어야 함
 - 신호위반의 경우 교차로와 도로의 구조에 맞게 설치되어야 함
 - 내민식과 문형식 철주를 사용하여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카메라 설치 지점과 같은 높이의 지주에(주로 카메라 우측) 속도 및 신호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단속 알림 표지를 설치함
- 무인 교통단속 표지와 병행하여 최고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표지판의 크기는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라 기본형으로 설치한다.
- 무인 교통단속 표지의 설치위치는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도로의 구조를 고려하여 ±50m 정도 증감할 수 있으며, 도로구조적인 여건 등을 고려한 공학적인 판단에 따라 설치위치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표 4-4> 무인 교통단속 예고표지 설치 위치

도로 종류	국도/간선도로	
제한속도(km/h)	70	60
1차 예고표지 위치(km)	1.0	1.0
2차 예고표지 위치(m)	300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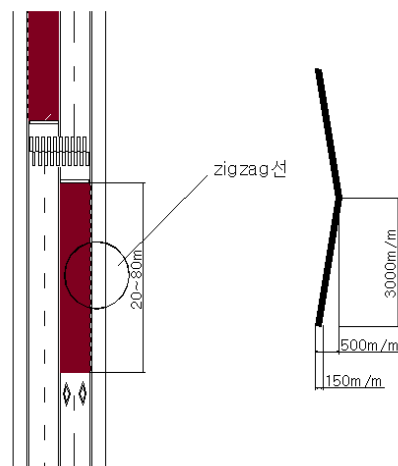


[그림 4.16] 무인 교통단속표지 및 보조표지(예고) 로고·문안 예(기본형)

4.4 도로 적색포장

2004년 제정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경찰청)의 기준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내 주 횡단보도에는 노면상태, 종단구배 등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미끄럼 저항이 필요한 경우 진행 방향에 일정구간을 전면(全面)포장 방식으로 암적색의 미끄럼방지포장을 하고 주·정차 금지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하여 횡단보도 예고로 표시 하도록 되어있다.

2004년 제정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에 제시되어 있는 암적색포장의 표준 기준은 아래와 같다.



[그림 4.17] 암적색 미끄럼방지포장과 지그재그선

4.4.1 현황

현재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노인보호구역의 대부분이 도로에 적색포장을 적용하여 개선사업을 시행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에 의하면 주 횡단보도에 노면상태, 종단구배 등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미끄럼 저항이 필요한 경우 진행방향에 일정구간을 전면(全面)포장 방식으로 암적색의 미끄럼방지포장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어린이(노인)보호구역사업을 시행 하면서 과다하게 노면 적색포장을 실시하였다.

1. 시점부와 횡단보도 전방에 주로 설치
2. 기준이 없이 시공되어 보호구역마다 위치·길이 등이 다르게 설치
3. 오염에 비교적 강한 적색 미끄럼방지포장 또는 내구성이 우수한 수지계열의 적색도료를 포장면에 덧씌워 설치

4.4.2 문제점

1. 유지·보수
2. 내구성
3. 설치비용 과다
4. 적색포장 표면에 융착식 도료에 의한 노면표시 설치 불가능

4.4.3 개선

주요 횡단보도 전방 등 미끄럼 방지기능이 필요한 지점에 제한적으로 설치한다. 즉 보호구역내 미끄럼방지포장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구간에 한해 적색으로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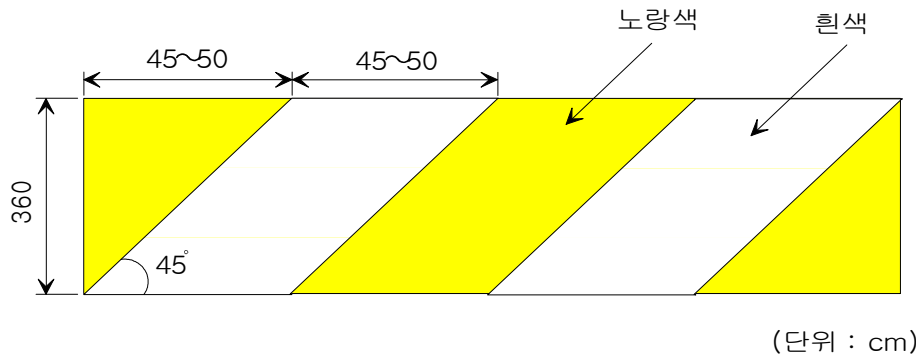
보호구역이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30Km/h이하로 속도제한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4.4.4 대체 시설로 시인성 확보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만으로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의 시점임을 인지시키고, 주의 운전토록 하는 것이 불충분한 경우 과속방지턱 또는 가상과속방지턱을 활용하여 보호구역 시점의 시인성을 향상시킨다.

(가상)과속방지턱은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원호형 과속방지턱 규격과 색상
 - (가상)과속방지턱은 도로의 전폭에 시설
 - 황색 및 백색 사선 도색시 설치각도(45도) 준수
 - 가상과속방지턱은 원호형의 110% 규격 적용



[그림 4.18] 과속방지턱

4.5 과속 방지턱

4.5.1 설치 장소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의 다음과 같은 구간에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한다. 과속방지턱의 설치장소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마을 통과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2.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3. 공동 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4.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표 4-5> 과속방지턱의 설치위치 및 설치해서는 안 되는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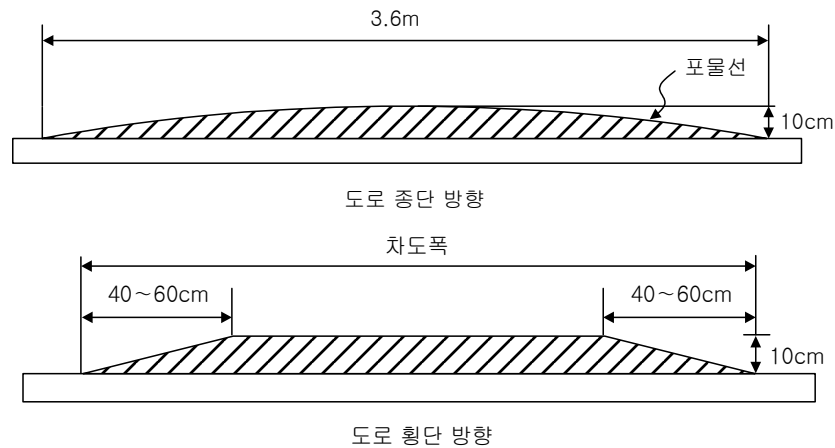
설치위치	설치금지위치
• 교차로 및 도로굴곡지점에서 30m 이내 • 도로 오목종단곡선부 끝에서 30m 이내 • 최대경사 변화지점에서 20m 이내 (10% 이상 경사시) • 교통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 • 연도진입이 방해되는 곳 또는 맨홀 등 작업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장소

4.5.2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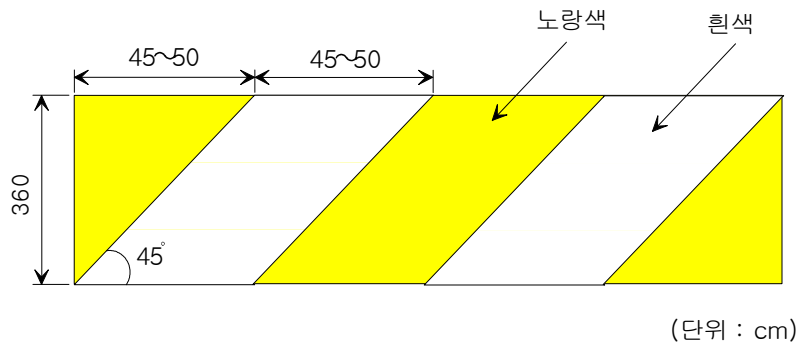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로 한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길이 3.6m, 설치 높이 10cm의 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지도로 중 폭 6m 미만의 소로 등 표준규격이 적용 지역의 여건으로 보아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길이 2.0m, 설치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다.

원호형 이외의 다른 형상의 과속방지턱은 설치장소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때의 형상 및 제원은 별도의 검토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그림 4.19] 일반적인 과속방지턱의 형상 및 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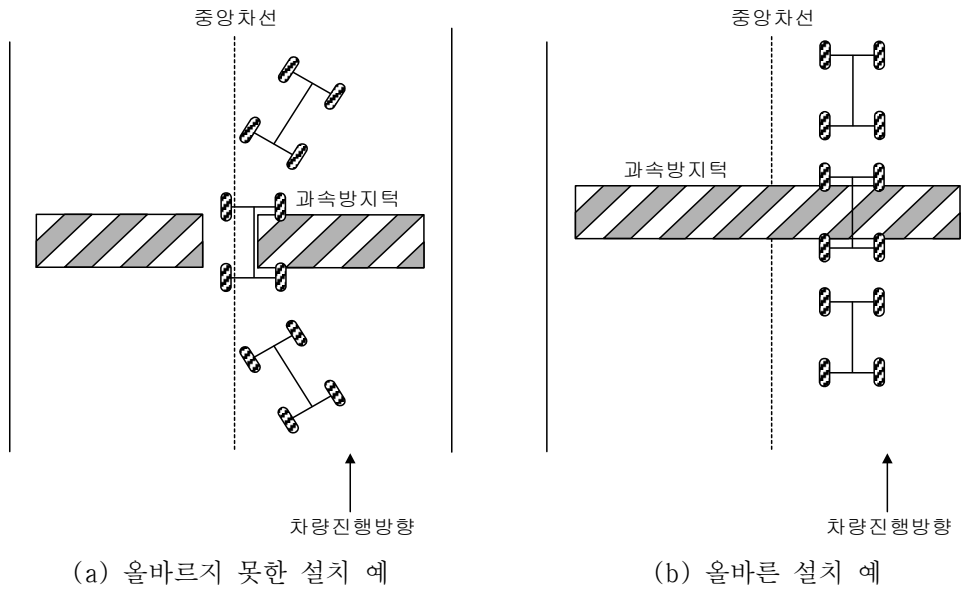
[그림 4.20] 과속방지턱의 표면 도색

4.5.3 시공시 유의사항

과속방지턱은 차도 전폭에 걸쳐서 도로 폭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다만, 차도에 L형 측구 등 배수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포장 폭을 대상으로 한다.

양방향 도로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에는 방향별로 도로 편측에만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달리하는 경우를 금한다.

도로의 중앙차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을 비우는 설치를 금한다.



[그림 4.21] 과속방지턱의 설치 예

4.6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교통약자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말뚝주변에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장애인 안전시설」을 참조한다.

횡단보도 부근의 턱낮추기 구간에 자동차의 진입 및 우회전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시 일종의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한다.

4.6.1 종류 및 설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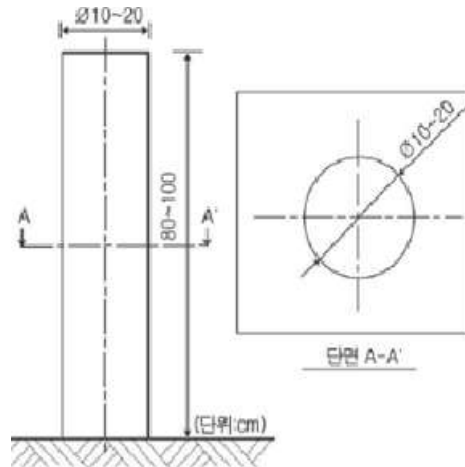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고정식과 가동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10~20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림 4.22]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상세도

4.6.2 유의사항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차도 시설한계 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보도에 설치하는 경우는 유효보도폭을 줄이지 않도록 크기나 위치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자동차의 오버행 부분이 말뚝에 닿지 않도록 유의한다.

4.7 횡단 시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및 단일로에 설치한다. 횡단보도는 가능한 차도에 직각으로 설치하며, 가능한 교차로 교차점에 근접하여 설치한다.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횡단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

보행자의 수가 적어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성은 적으나 보행자가 반드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작동 신호기의 설치를 적극 고려한다.

4.7.1 횡단보도 설치 일반 기준

횡단보도의 폭은 횡단 보행자 교통량, 보행자 신호시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최소 4.0m 이상이어야 한다.

이면도로의 진·출입으로 보도가 단절된 지점,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는 가급적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횡단보도를 통하여 차량이 보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을 함께 설치하여 차량 진입을 억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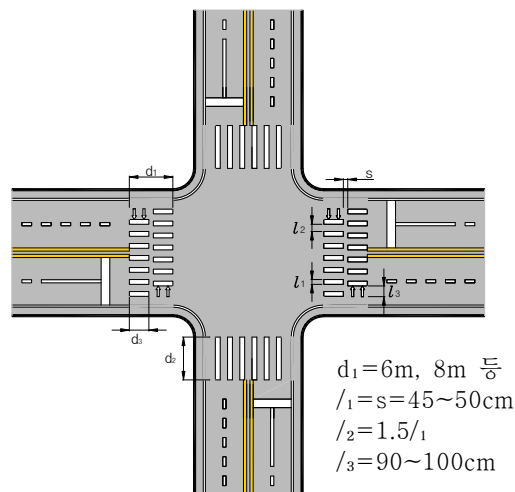
4.7.2 노면표시를 이용한 횡단보도

1. 횡단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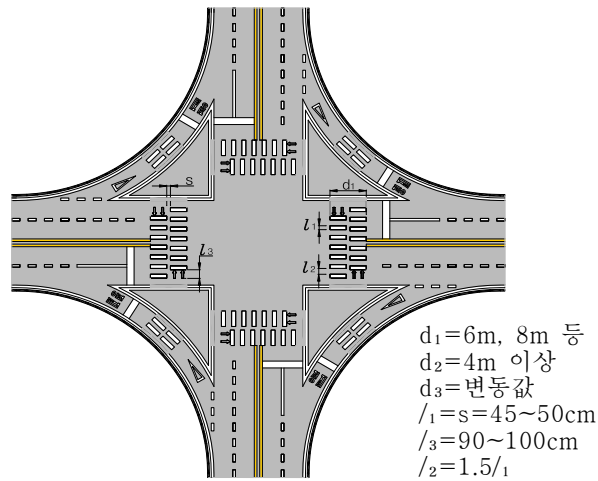
횡단보도의 폭원은 횡단 보행자 교통량에 따라 정해야 하며 최소폭원은 4.0m로 한다. 단일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는 차로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택, 상가, 이면도로 등의 진·출입로 보도 연결구간을 노면표시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보도의 폭과 일치시킨다.

횡단보도의 폭원이 4m를 초과하는 경우, 2m 단위로 확폭한다. 횡단보도의 폭원이 6m 이상인 경우, 도로 폭원을 2등분하여 설치한다.



[그림 4.23] 횡단보도 표시 설치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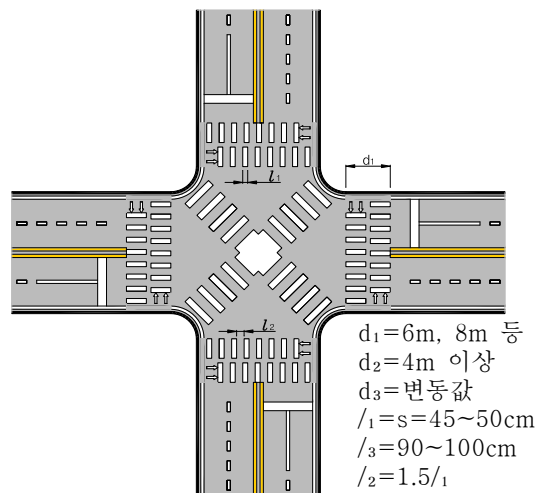
[그림 4.24] 도류화 횡단보도 표시 설치 예시도

2. 대각선 횡단보도

대각선 횡단보도는 일반 횡단보도에 비하여 동시에 많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차량용 신호등은 전방향 적색신호이어야 한다.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대각선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횡단보도의 설치위치는 보행자의 동선,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량, 신호주기, 교차로간 거리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백색으로 폭원은 4m 이상이고 노면을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표시하는 지브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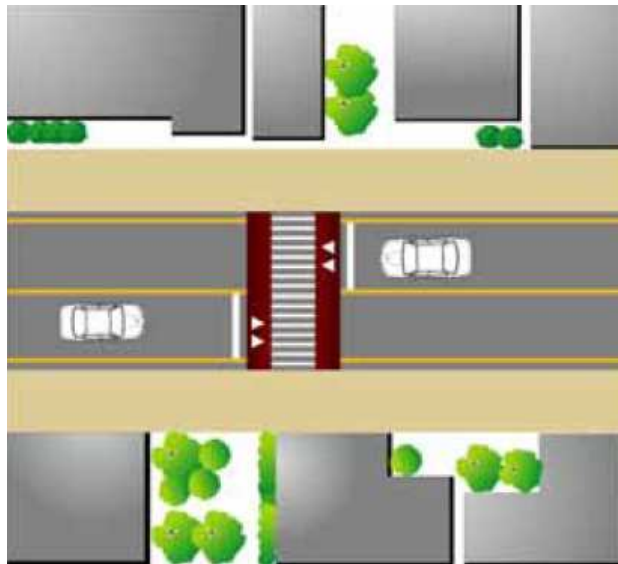
[그림 4.25] 대각선 횡단보도 표시 설치 예시도

4.7.3 고원식 횡단보도

차량의 제한속도를 30Km/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관련 교통안전시설과 함께 설치한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보행자 횡단보도를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면 보다 높게 하여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이다. 차도 노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을 설치하며, 보행자는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다.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횡단보도가 연석과 비슷한 높이로 구성되어 별도의 수직 이동이 발생하지 않아 양호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림 4.26]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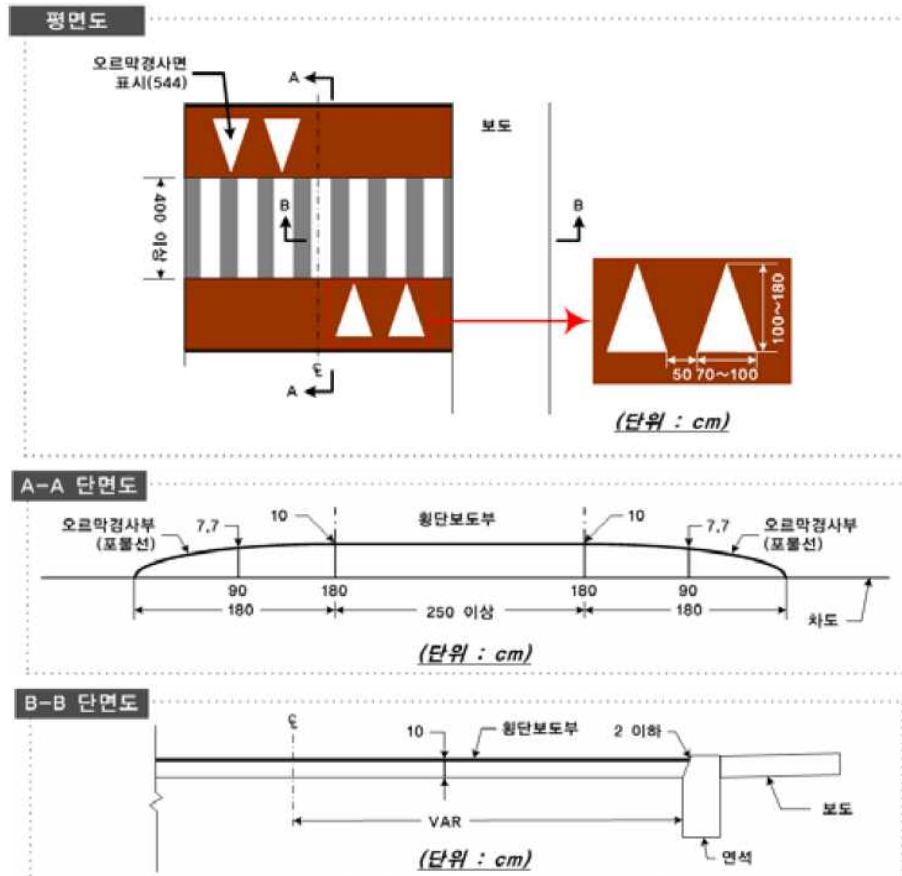
1. 종류 및 구조

고원식 횡단보도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오르막경사부와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부분의 형상은 [그림 4.27]을 표준으로 한다.

고원식 횡단보도의 횡단보도부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횡단보도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고원식 횡단보도의 오르막경사부는 암적색 바탕에 흰색 오르막경사면(544) 표시를 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사다리꼴 구조물의 경사(턱) 부분과 횡단보도 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재질로 하고 경사가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오르막경사부는 과속방지턱의 오르막경사면 형상과 동일하게 포물선으로 처리한다. 고원식 횡단보도의 횡단보도부 폭은 400cm 이상으로 하되, 보행 통행량이 적어 횡단 시에 보행자간에 마찰이 예상되지 않는 곳에서는 250cm까지 폭을 축소할 수 있다.



[그림 4.27] 고원식 횡단보도(일반구간) 형상 및 제원

고원식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부는 가급적 보도와의 높이 차이를 2cm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도와 차도의 단차 없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 경우는 시각장애인들이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2. 설치방법 및 유의사항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보도 턱нат추기가 설치된 지점에 연결하여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고원식 횡단보도와 보도의 높이 차이를 2cm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도의 턱нат추기부와 고원식 횡단보도의 끝단이 서로 다른 방향의 경사면으로 연결될 경우 휠체어 장애인은 턱нат추기부와 고원식 횡단보도 연결부분 통과 시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안전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그림 4.28] 참조).



[그림 4.28] 보도와 고원식 횡단보도의 부적절한 경사면 연결

따라서 이미 노면표시 횡단보도와 연결된 턱낮추기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가능한 횡단보도 노면표시의 시인성을 높여 횡단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는 턱낮추기부와 고원식 횡단보도 사이의 단차가 2cm 이하인 구조로 한다.

특히 보도와 차도의 단차 없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등이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의 설치에 특별히 유의한다.

고원식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자동차가 보도로 불법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도 부분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의 설치를 고려하고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자동차와 횡단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곳에는 배수처리를 고려해야 하며, 동절기에 눈 등에 의한 미끄러짐에 유의해야 한다.

4.8 보행자작동 신호기

보행자 작동신호기는 보행자 스스로 버튼을 눌러 신호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보행자가 드물거나 일정한 시간대에만 있는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신호기이다.

이 지침에서 설명한 내용 이외의 상세한 설치기준은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경찰청」에 의한다.

4.8.1 설치기준

1. 보행자작동 신호기는 차량신호기와 함께 사용한다.
2.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수가 적어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성은 적으나 보행자가 반드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하며, 또한 일정 시간대에만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에 설치한다.
3. 심야시간대 차량신호기를 점멸 운영하는 지점 등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4. 압버튼 장치는 1m 내외의 높이로 한다.

4.8.2 설치 권장 장소

1. 단일로

- 어린이보호구역내 위치한 횡단보도로서 특정시간대를 제외하고 평소 보행자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점
- 일반 국도 및 지방도 등에서 보행자 교통량은 많지 않으나 보행자의 도로횡단 필요성이 있어 신호기가 설치된 지점
- 보행자 교통량이 신호기 설치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기타 설치기준에 의하여 신호기가 설치된 지점
- 기타 공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2. 교차로

- 보행자 교통량이 신호기 설치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기타 설치기준에 의하여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3지 또는 4지)에서 부도로의 교통량이 정체시간대에도 1주기내(보행자의 신호 요청이 없을 경우 해당 현시의 최소녹색시간)에 모두 소거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지점에서 간선도로 변에 위치한 횡단보도
-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로 주도로의 교통혼잡이 크게 개선될 수 있고 부도로의 현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악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4.8.3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 할 경우

1. 함체 및 버튼은 1개로 통합하여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용 및 보행자 작동신호기 겸용 버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무선으로 작동하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송·수신기와 상호 호환되어 송신기에서 위치안내요청이 있으면 신호기의 위치를 안내하고, 신호안내 요청이 있으면 보행자 작동신호기 버튼을 누른 것과 같이 작동되어야 한다.

4.8.4 안내표지의 설치

1. 보행자 작동신호기를 설치한 장소에는 보행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내표지는 도로의 폭 등을 고려하여 축소 또는 확대 설치 할 수 있다
3. 안내표지는 보행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4.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표지 만드는 방식의 공통기준을 따른다.

<표 4-6> 안내표지 설치·운영 사례

건너편 보행신호등 위 설치용		신호기 압버튼 아래 설치용	
			
규격	가로:550mm × 세로:200mm - 편도3차로 이상은 2배 확대 - 조명식으로 설치(권장)	규격	가로:150mm × 세로:550mm
			

제 5 장

보행 공간 확보

5.1 설계 원칙

5.2 유효 보도폭

5.3 보도 설치공간 확보 기준

5.1 설계 원칙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정의된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의 일 부분이다. 도로 조건, 교통 조건 및 지역 조건 등 을 감안하여 현장에 맞게 설치하도록 한다.

‘보호구역 개선사업’시행 시 보도 및 보행자 통행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설치에 적용 한다.

5.1.1 안전성

보행자의 통행속도는 자동차의 통행속도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은 가능한 차도로부터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지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보도와 차도를 충분하게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석 등을 활용하여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분리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의 사용 등을 통한 안전 대책을 강구 한다.

보도의 구조는 노약자, 장애인 등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된 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1.2 쾌적감

보도는 안전과 더불어 보행자에게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하는 구조여야 한다. 쾌적한 환경은 주간 및 야간, 맑은 날 및 악천후에도 가능한 유지되도록 한다. 특히 비가 오는 조건에서 보도에 빗물이 고여 튀거나 미끄러운 노면으로 인한 보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1.3 연속성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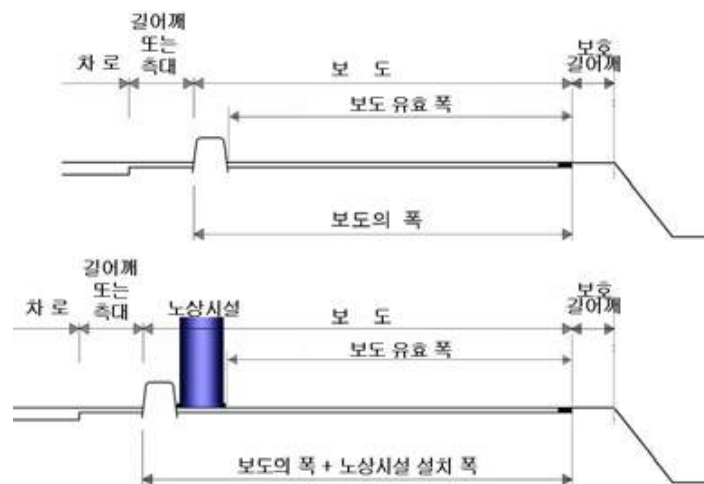
보도의 연속성은 학교 및 주요 공공시설 등 보행자의 통행 수요가 많은 장소에서 특히 강조되며, 이들 도로에는 보행자의 통행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도로의 한쪽에만 보도를 조성할 경우 횡단보도를 적절히 배치하여 최단거리로 목적지로 보행자가 이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5.2 유효 보도폭

보호구역내에서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보행자의 분리를 최우선 개선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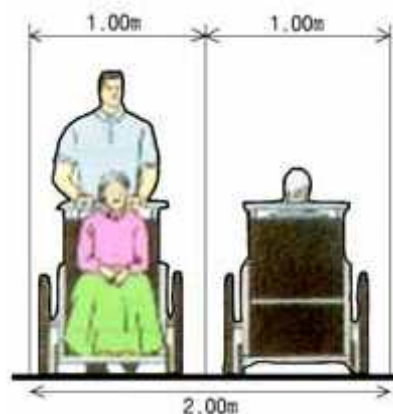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보·차혼용도로에서는 우선적으로 보도 공간을 확보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최소 유효보도폭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유효보도폭은 보도폭에서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폭으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이다.



[그림 5.1] 유효 보도폭

5.2.1 최소 유효 보도폭

유효 보도폭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최소 2.0m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 유효폭 2.0m는 휠체어 사용자 2인이 교행 가능한 최소 폭에 해당한다([그림 5.2]참조). 단,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그림 5.2] 최소 유효보도폭

5.2.2 유의사항

유효보도폭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횡차 사용자가 다른 횡차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한다. 또한 유효보도폭이 1.5m 미만인 경사진 보도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횡차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m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공간(참)을 설치한다.

조명, 가로수, 전신주 등은 일정 공간 내에서 일렬로 배치되어 관리함으로써 도로 경관을 향상시키고 보행 공간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지등은 조명 지주 및 신호기 지주를 이용하여 통합함으로써 지주의 개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보행자의 시인성 향상 및 충돌에 의한 상해 방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또한 표지 지주 및 보행자의 무단횡단 방지용 울타리 등은 시설한계가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연석을 이용하여 고정함으로써 보도의 유효 폭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5.3 보도 설치공간 확보 기준

보도는 통행 자체의 목적 이외에도 휴식, 산책, 쇼핑 등의 용도로 활용되므로, 대상 지점의 토지 이용 및 보행 목적 등을 토대로 다양한 보도 형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공원 등과 연결되는 도로 등에서는 획일적인 보도 형식을 결정하기보다는 미적인 측면과 쾌적한 통행이 될 수 있는 형식의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도는 도로 지형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 이외엔 도로 양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지형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방향 설치가 가능하며, 이때는 왕복교통을 고려하여 보도폭원을 결정한다.

5.3.1 차로폭 조정을 통한 보행로 확보

보도 조성을 위한 용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최소 유효보도폭을 확보할 수 없는 지점에는 <표5-1>의 시설기준에서 정한 최소 차로폭으로 차로폭을 조정하여 보도 설치공간을 확보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보도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도로의 종류별로 아래의 <표5-1>에서 정한 최소 차로폭으로 조정하여 최대한 보행공간을 넓게 확보한다.

특히, 보호구역내에서 최고 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그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속도저감시설이 설치된 경우 설치 가능한 최소차로폭인 2.75미터로 조정하여 최대한 도로의 공간을 보행자를 위해 배려하도록 한다.

특정 구간에 대하여 제한속도를 낮출 경우 적절한 물리적 속도저감 시설과 관련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표 5-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제10조(차로)

- ① 도로의 차로수는 도로구분 및 기능, 설계시간교통량, 도로의 계획목표 연도의 설계서비스 수준, 지형 상황, 나누어지거나 합하여지는 도로의 차로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② 도로의 차로수는 교통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홀수 차로로 설치할 수 있다.
- ③ 차로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 자동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폭을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구분			차로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도로			3.50	3.50	3.25
일반도로	설계속도 (km/h)	80이상	3.50	3.25	3.25
		70이상	3.25	3.25	3.00
		60이상	3.25	3.00	3.00
		60미만	3.00	3.00	3.00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전차로의 폭과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 차로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⑤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른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간선 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의 차로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류장의 추월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3.2 일방통행제 시행을 통한 보도공간 확보

일방통행제는 용량 증대, 상충수 감소, 안전성 향상, 신호 현시체계의 단순화/연동화, 도로 이용의 효율증대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보·차도가 미 분리된 8m 이하의 도로는 우선적으로 일방통행로 지정을 검토하고, 도로의 양쪽 또는 한쪽에 보도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변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일방통행제 또는 보도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행공간의 확보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고려하여 보도공간의 포장재질을 달리하고 연석을 설치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그림 5.3] 일방통행제와 연석구분을 통한 보도설치

5.3.3 포장재질과 길가장자리구역선으로 보행공간 확보

주변 상가의 상권보호, 민원 등으로 인하여 차도와 연석으로 분리된 보행공간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길가장자리구역선으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고 보행로의 포장재질과 색상을 달리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차도와 보도의 구분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이 경우 차량의 무단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또는 개방형 방호울타리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5.4] 포장재질과 길가장자리 구역선으로 보도구분

5.3.4 도로폭원별 보·차도 구분 방안

1. 8m 도로 조성

<표 5-2> 8m 도로 조성

구 분	평면구성	횡단구성	조성방법
일방 통행 도로			○ 일방통행이 가능하고, 보행량이 많아 보행자 위주 도로 조성시 굴곡 도로(Slalom) 또는 굴절도로(Crank)를 조성하여 차량의 통행 속도를 낮춤
			○ 보도상에는 낮은 화단 또는 벤치 등을 조성하여 보행자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 상가밀집도로, 학교통학로
양방 통행 도로			○ 양방통행일 경우 편측에 폭 2m의 보도 조성 ○ 학교통학로, 주거지 이면도로

2. 10m 도로 조성

<표 5-3> 10m 도로 조성

구 분	평면구성	횡단구성	조성방법
일방 통행 도로			○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 ○ 보도상에 조경 및 벤치 등 설치
			○ 상가 등 조업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도로는 Crank로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도로 ○ 상가밀집지역의 도로 등에 적합

양방 통행 도로			○ 도로양측에 폭 2m의 보도를 조성 ○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보행 공간 확보
			○ Pinch Point를 설치 ○ 상가밀집도로, 대단위아파트단지도로 등에 적용

3. 12m 도로 조성

<표 5-4> 12m 도로 조성

구 분	평면구성	횡단구성	조성방법
일방 통행 도로			○ 도로 양측에 2m 보도 설치 ○ 도로 양측에 평행주차
			○ 도로 양측에 2m 보도 설치 ○ 도로 양측에 평행주차 ○ 편도 2차로의 차도 운영
양방 통행 도로			○ 도로 양측에 2m 보도 설치 ○ 도로 양측에 평행주차 ○ 양방 2차로로 차로 운영
			○ 도로 양측에 2m 보도 설치 ○ 도로 양측에 엇갈림 주차
			○ 도로 양측에 3m 보도 설치 ○ 양방 2차로의 차로 운영

제 6 장

장애인 안전시설

6.1 턱낮추기

6.2 연석경사로

6.3 점자블록

6.4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6.1 턱낮추기

턱낮추기는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줄여 휠체어사용자, 유모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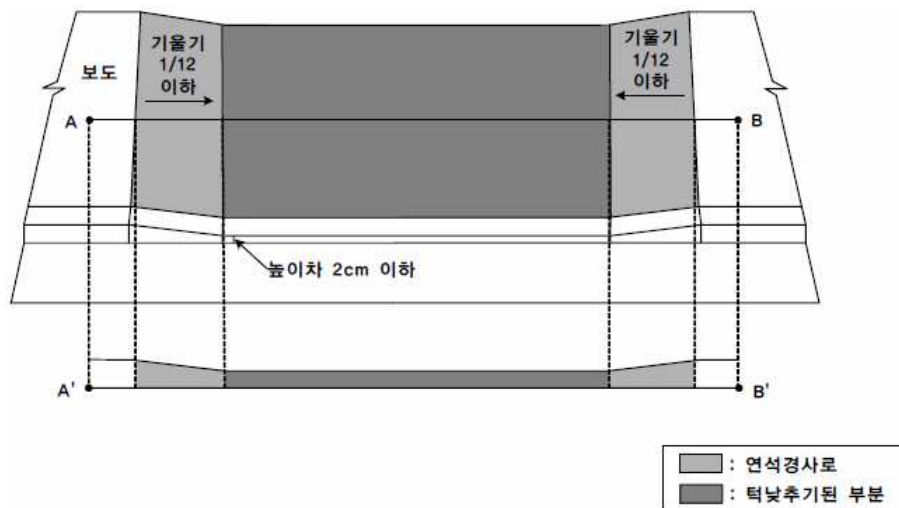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보도와 차도의 단차는 2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단 주택가, 학교 주변의 편도 2차로 이하인 도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를 같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등이 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 설치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6.1.1 일반적인 설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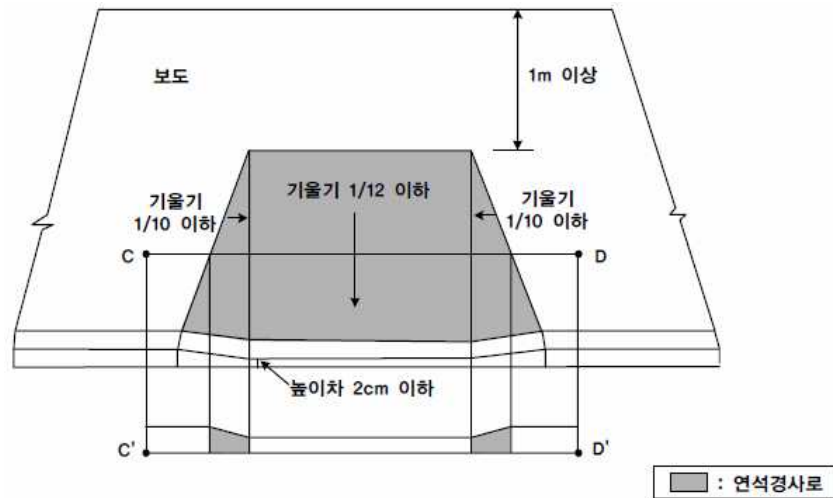
[그림 6.1]과 [그림 6.2]는 턱낮추기 유형 I 과 II의 상세 표준도이다.

휠체어사용자나 유모차의 경우, 연석경사로의 경사가 급하면 연석경사로를 이용시 장애가 되며, 노면 동결시나 우천시 미끄럽거나 하강시 발생하는 가속도로 인하여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경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연석경사로의 경사는 20분의 1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조건이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시에도 경사는 최대 12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유형 II형의 경우, 경사로 옆면의 경사는 10분의 1 이하로 한다.



[그림 6.1] 턱낮추기 유형 I : 상세 표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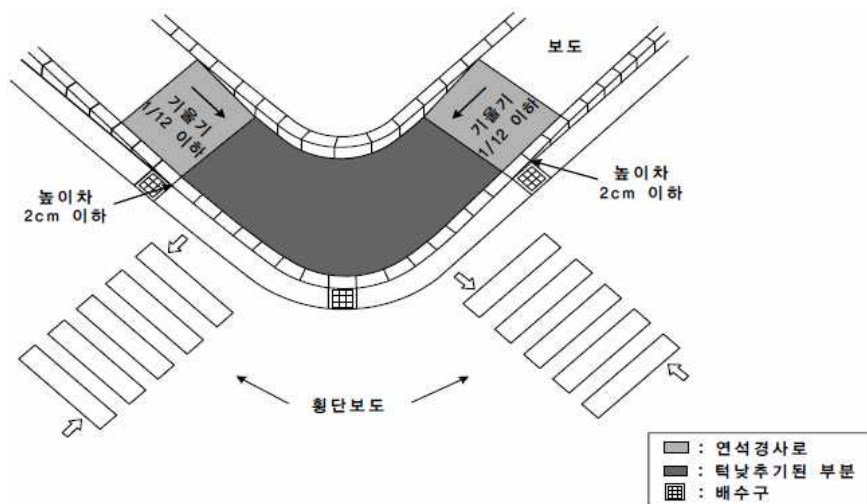
[그림 6.2] 턱낮추기 유형 I : 상세 표준도

6.1.2 횡단보도가 연접한 교차부에서의 설치방법

보도의 폭이 좁고 횡단보도 간 간격이 좁은 경우 교차부 모서리 부분에 턱낮추기를 하게 되면 평탄한 대기공간이 확보되지 못하여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게 되며, 우천시나 노면 동결시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위험한 장애물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 진입 전에 [그림 6.3]의 유형 IV와 같이 보도 전체를 턱낮추기 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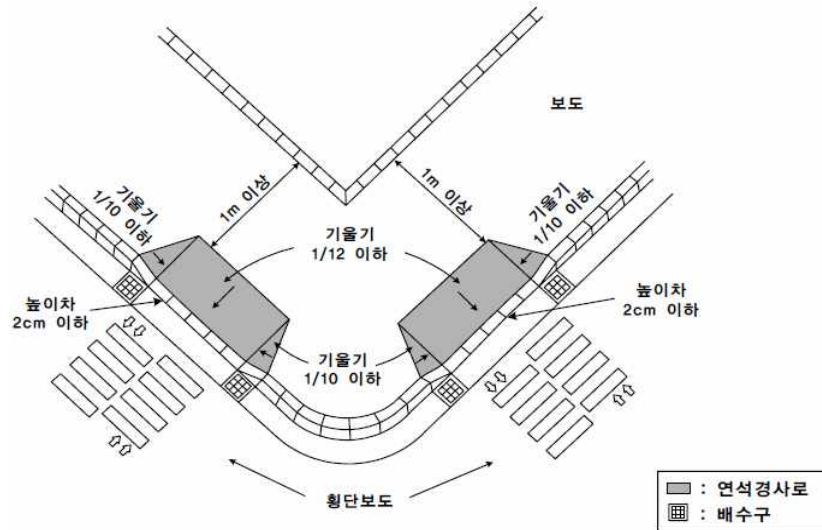
유형 IV의 경우, 턱낮추기 된 부분으로의 자동차 진입 방지, 불법 주차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림 6.3] 턱낮추기 유형 IV : 보도폭이 좁고 횡단보도간 간격이 좁은 경우

유형 V의 경우, 보도의 폭이 넓고(즉, 연석경사로 외에 보도폭이 1m 이상의 확보할 수 있는 경우) 횡단보도 간 간격이 넓어서 충분한 대기공간의 확보가 가능한 곳에서는 유형 V와 같이 횡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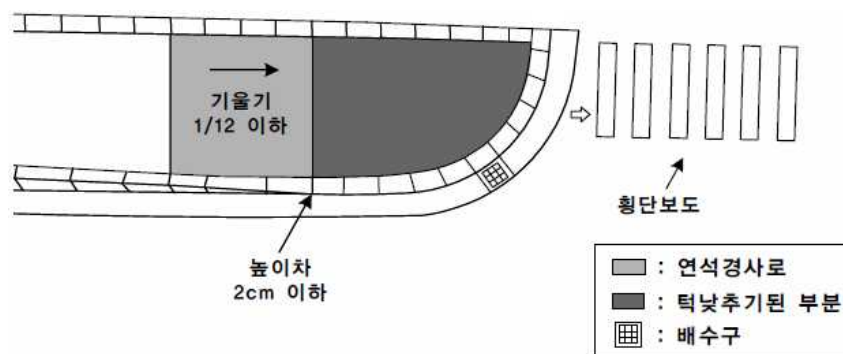
지점에만 턱낮추기를 한다. 연석경사로 뒤의 여유 공간은 보행자의 통과를 위한 공간 겸 대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평탄해야 한다.



[그림 6.4] 유형 V : 보도폭이 넓고 횡단보도간 간격이 좁은 경우

6.1.3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의 설치방법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나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는 턱낮추기 유형 I의 방법을 적용하여 [그림 6.5]와 같이 턱낮추기를 한다.



[그림 6.5] 턱낮추기 유형 VI :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

6.2 연석경사로

연석경사로는 턱낮추기를 시행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경사로이다. 연석경사로의 기울기의 방향은 보행자의 보행 동선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연석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무리하며, 보도등의 질감과 달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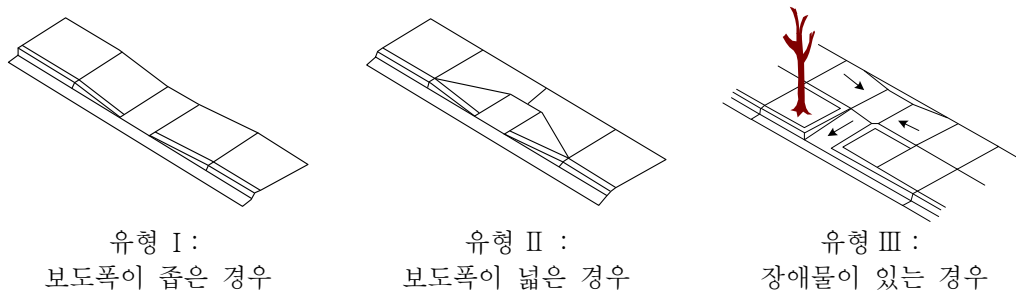
6.2.1 연석경사로의 유형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는 보도의 폭과 보도의 조건에 따라 [그림 6.6]과 같이 3가지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보도폭이 넓어 연석경사로 뒤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1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횡단지점에만 부분적으로 턱낮추기를 하여 통과 보행자와 대기공간을 확보한다(턱낮추기 유형Ⅱ).

식수대나 기타 장애물 때문에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에 연접하여 턱낮추기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도 뒤쪽에서 ‘유형Ⅰ’과 동일한 방법으로 턱낮추기를 하여 연결한다(턱낮추기 유형Ⅲ).

단, 보행에 지장을 주는 노상 장애물은 제거 또는 이설하여 유형Ⅰ 또는 유형Ⅱ의 형식을 따르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6.6]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의 유형

6.2.2 연석경사로의 길이

연석경사로의 길이는 연석경사로의 기울기, 기존 연석의 높이, 턱낮추기된 지점의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연석경사로의 길이를 계산한 예는 <표 6-1>과 같다. 예를 들어, 기울기 1/12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연석의 높이가 15cm이고 턱낮추기한 지점의 높이차가 2cm인 경우, 연석경사로의 길이는 156cm가 된다.

<표 6-1> 연석경사로의 길이

연석경사로의 기울기	턱낮추기된 지점의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cm)	연석경사로의길이(cm)		
		연석의 높이(cm)		
		15	20	25
1/12	0	180	240	300
	1	168	228	288
	2	156	216	276
1/16	0	240	320	400
	1	224	304	384
	2	208	288	368
1/20	0	300	400	500
	1	280	380	480
	2	260	360	460

6.3 점자블록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이다.

점자블록의 색상은 약시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황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변 환경 여건상 황색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주변 바닥재의 색상과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색상을 설치한다.

주변 보도 블록색과 명도 대비가 적은 경우, 적절한 대비효과를 가져오도록 점자블록의 가장자리를 다른 색상을 이용해 둘러서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다.

점자블록은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의 두 종류가 있다.

1. 점형블록

위치 감지용으로 횡단지점,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 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 전환 지시용으로 사용한다.

2. 선형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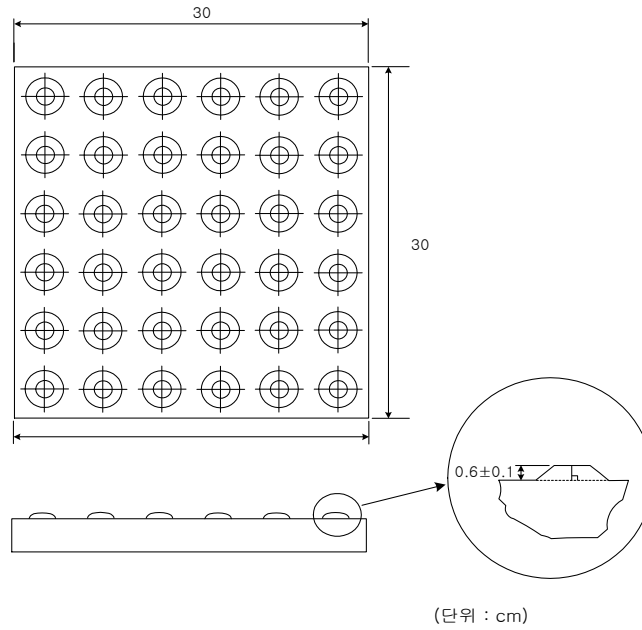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 지점, 횡단 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하여 목적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 혹은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유지한다.

6.3.1 형태와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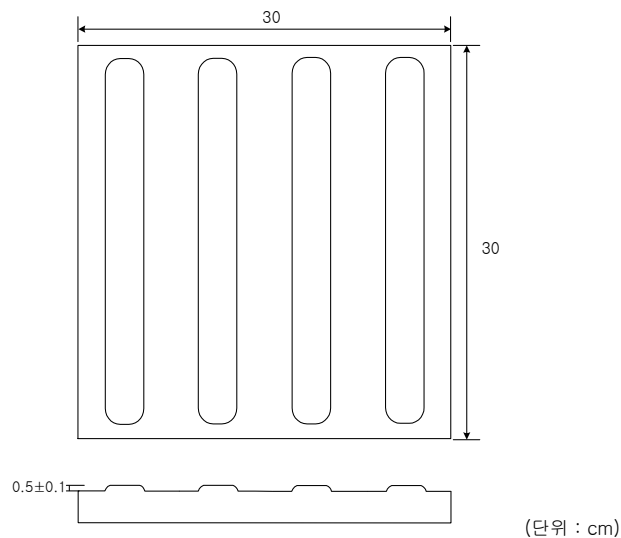
점형블록은 반구형, 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 배열형이 있다.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의 형태와 규격은 <표 6-2>와 [그림 6.7], [그림 6.8]에 제시하였다. <표 6-2>에 제시된 점자블록의 표준형의 규격은 30cm × 30cm이다. 표준형의 규격을 축소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표 6-2> 점자블록의 형태 및 규격

점형블록(표준형)		선형블록(표준형)	
규격	30cm × 30cm	규격	30cm × 30cm
돌출점의 수	36개	돌출선의 수	4개
돌출점의 높이	0.6 ± 0.1cm	돌출선의 높이	0.5 ± 0.1cm
돌출점의 형태	원뿔 절단형	돌출선의 형태	상단부 평면형
색상	황색	색상	황색



[그림 6.7] 점형블록의 형태 및 규격



[그림 6.8] 선형블록의 형태 및 규격

6.3.2 설치방법 일반

점자블록을 연이어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규격,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하며, 점자블록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한다.

장애물을 피하게 유도하는 경우, 유도 경로가 복잡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빈번히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선형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선형블록은 점형블록에 연계해서 통행 방향을 잡는 데 필요한 일정한 거리까지만 설치한다.

점자블록 설치 위치에 하수구 뚜껑이나 기타 보도 표면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

고 설치한다.

선형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단순하게 방향을 유도해야 시각장애인이 혼동하지 않는다.

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통행 방향을 유도하는 경우 선형블록은 보행량이 가장 많은 도로의 방향으로 향하게 설치해야 한다.

점자블록 위에 쓰레기통이나 기타 전신주, 이동 광고시설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6.3.3 설치장소별 설치방법

1. 횡단보도

점자블록은 횡단보도의 양단에 반드시 설치한다.

점자블록의 턱낮추기쪽 면은 횡단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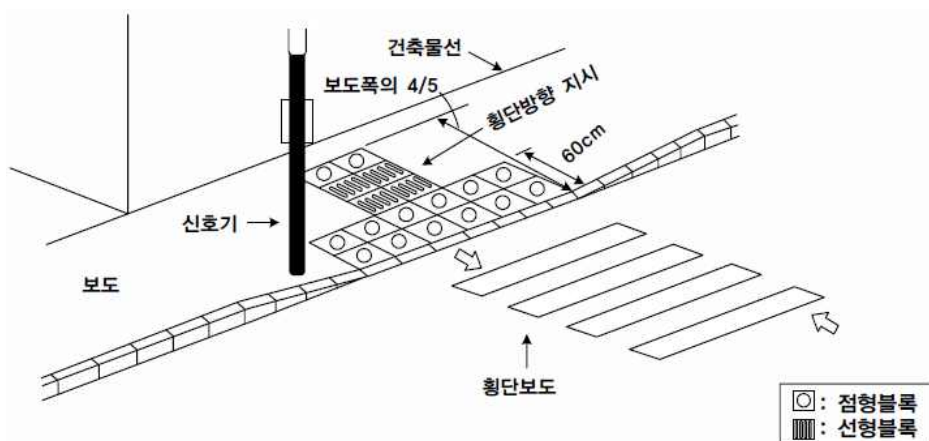
점형블록의 가로폭은 횡단보도의 폭만큼, 세로폭은 연석과 평행하게 60cm 폭으로 설치한다.

선형블록은 횡단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중앙에 60cm의 폭으로 설치하고, 길이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폭의 4/5가 되는 지점까지 설치하며 마무리는 점형블록으로 한다. (점자블록 설치유형 I :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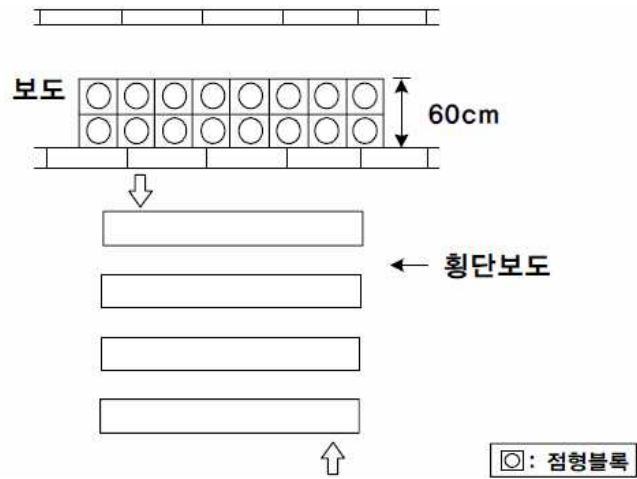
보도폭이 좁은 경우, 점형블록만을 60cm의 폭으로 설치한다. (점자블록 설치유형 II).

통행방향이 연석과 직각이 아닌 경우에는 선형블록을 통행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점자블록 설치 유형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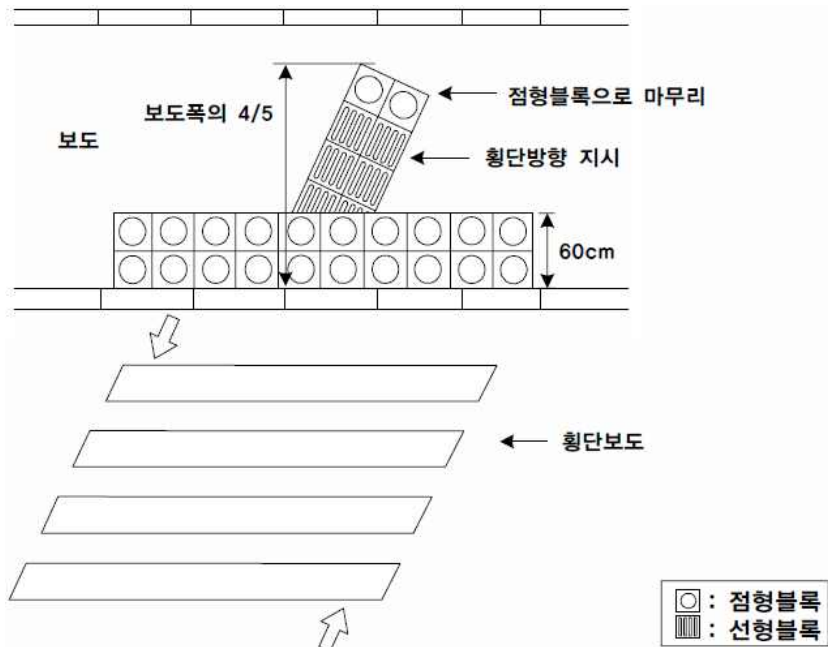
횡단지점의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 곡선을 따라 [그림 6.9]와 같이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선형블록으로 횡단방향을 지시한다(점자블록 설치 유형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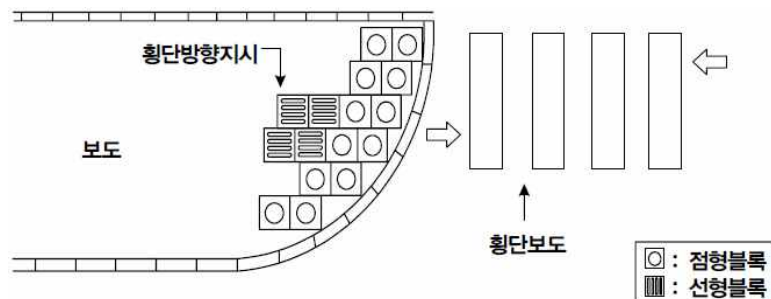
[그림 6.9] 점자블록의 설치 유형 I : 횡단보도 설치의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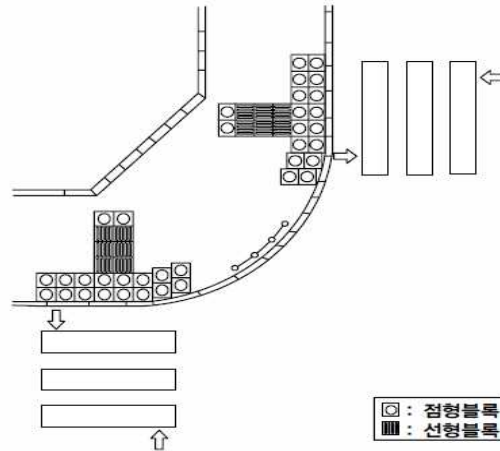
[그림 6.10] 점자블록의 설치 유형 II : 보도의 폭이 좁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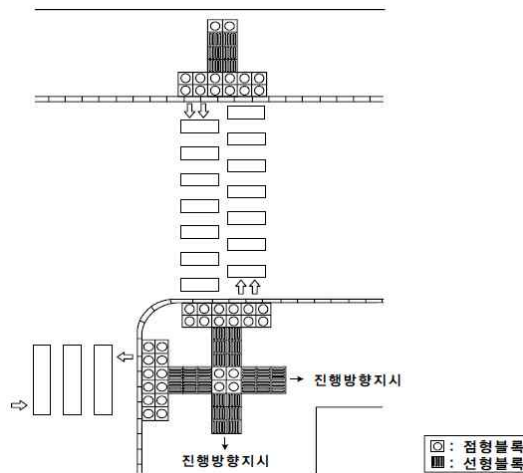
[그림 6.11] 점자블록의 설치 유형 III : 횡단 방향과 연석이 직각이 아닌 경우



[그림 6.12] 점자블록 유형 IV :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



점자블록의 설치 유형 V-1 : 두 횡단보도간 간격이 넓은 경우



점자블록의 설치 유형 V-2 : 두 횡단보도간 간격이 좁은 경우

[그림 6.13] 점자블록 유형 V : 두 횡단보도가 연접한 경우

6.3.4 연속적인 방향유도

방향 전환시에 보행 방향이 직각으로 꺾어지는 굴절점에는 점형블록을 선형블록의 2배 넓이로 설치한다.

선형블록의 진행방향이 직각으로 꺾어지는 곳 이외의 곡선부에서는 선형블록만을 설치하며, 선형블록의 돌출선 방향이 보행 방향과 일치하도록 굽어지는 정도에 적절하게 약간씩 방향을 틀어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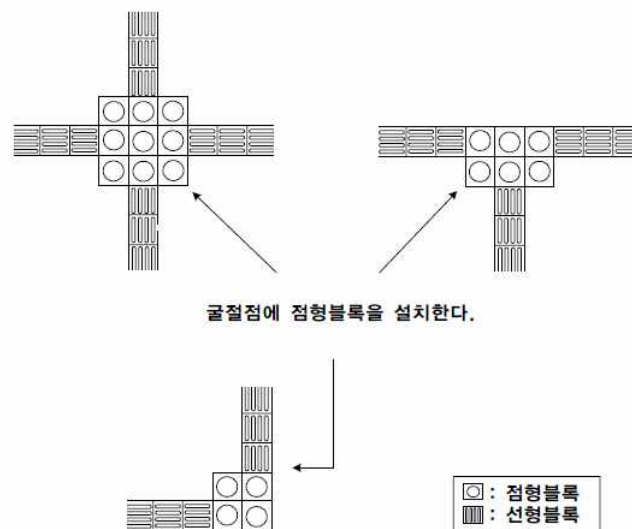
방향 유도시 선형블록 주변에 여유폭을 확보한다. 선형블록의 양쪽으로 최소한 60cm 이내의 지역에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다만, 통행량이 많거나 복잡한 거리의 경우 선형블록의 양쪽으로 최소한 20cm 이내의 공간에서는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선형블록은 가능한 한 직선으로 설치하고 분기점을 최소화하여 단순해야 시각장애인이 선형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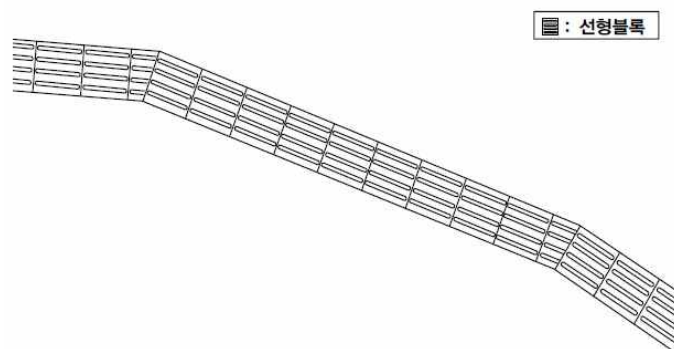
록을 따라 보행하기가 쉽다. 부득이한 경우, 보행 동선이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에게 방향 전환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혼동을 주지 않는다.

방향 전환이 직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에게 방향이 바뀐다는 정보를 주기 위하여 굴절점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그림 6.14]).

명확한 방향전환보다는 식수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어 보도여건상 불가피하게 직선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향 전환보다는 연속보행동선의 개념을 살려서 선형블록으로 연속해서 설치한다([그림 6.15]).



[그림 6.14] 직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



[그림 6.15] 비스듬하게 유도되는 경우

선형블록으로 방향 유도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는 선형블록 주변에 여유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이 선형블록에서 벗어났을 때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며, 시각장애인 안내자나 안내견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서 점자블록을 피하여 통행할 수 있는 보도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형블록의 양쪽으로 최소한 60cm 이내의 지역에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한다. 점자블록의 폭 최소 30cm와 양쪽 여유폭 60cm의 합은 150cm로 최소 유효 보도폭을 만족하게 된다. 통행량이 많거나 복잡한 거리 등에서 이러한 여유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형블록의 양쪽으로 최소한 20cm 이내의 공간에서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6.4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교차로의 형태, 지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교차로의 형태나 보행신호등 설치 지주의 위치 등이 부적절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개선한 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이 지침에서 설명한 내용 이외의 상세한 설치기준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경찰청」에 의한다.

6.4.1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과 아래의 장소의 횡단보도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1.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시각장애인 영구 임대주택 지역 등
2.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주변(사회복지관, 수용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3. 시각장애인 교육기관 및 학원 주변
4. 시각장애인 직장 밀집지역(관광호텔, 안마시술소 등)
5. 전철·철도역·여객터미널 주변 등
6.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건물 주변
7. 기타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요청하는 장소

6.4.2 송·수신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리모콘과 버튼 어느 것으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버튼의 설치 높이는 1m 내외로 하며, 버튼의 기능은 신호안내 음향을 작동시켜야 한다.

버튼은 시각 장애인이 버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접 물체와 대조된 색(황색)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버튼 합체의 상단 중앙부에는 흑색으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라고 인쇄하고, 하단 중앙부에는 ‘신호기 버튼’이라는 점자를 양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송신기(리모콘)

- 리모콘은 사람이 가로막고 있을 때나 신호기의 안테나를 향해 누르지 않아도 작동되는 라디오투파수 변조방식(RF방식)을 사용하여 지향성을 없애야 한다.
- 리모콘의 버튼을 작동시킬 때는 일정한 음향을 발사해 시각장애인이 건전지의 소모 및 고장 여부를 청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수신기

- 위치 안내음향
 - 위치 안내음향을 발생하여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까지 쉽게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 위치 안내음향은 <표 6-3>와 같이 구성한다. 이때 교차로의 경우 왼쪽이 오른쪽보다 1초 ~ 2초 늦게 시작하도록 하며, 동일지주에서는 멜로디가 오른쪽 신호등에서만 작동하도록 한다.

<표 6-3> 위치 안내음향의 구성

구 분	교차로 / 단일로	단일로
멜로디	“G장조의 미뉴엣 (J. S. Bach)” (피아노음) : 약 5초간 발생	
음성전달 (메시지 내용)	“○○교차로 ○○방향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대기선으로 이동하여 신호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왼쪽 : 남성, 오른쪽 : 여성)	“○○방향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대기선으로 이동하여 신호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성)

※ 권장사항 :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섬의 시작지점에 음성유도기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이때 다음 <표 6-4>과 같이 안내음향을 구성한다.

<표 6-4> 교통섬 지역에서의 음성유도기 유도음향의 구성

구 분	교통섬 지역
멜로디	“G장조의 미뉴엣 (J. S. Bach)” (피아노음)
음성전달 (메시지 내용)	“전방 OO 미터 앞 교통섬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왼쪽(오른쪽)에서 차량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하여 건너시기 바랍니다.” (여성 음성)

※ 이러한 음성전달 메시지의 내용은 교통섬의 구조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신호 안내음향
 - 리모콘 또는 버튼을 작동하면 보행신호체계에 따라 신호 안내음향이 발생해야 한다.
 - 리모콘 또는 버튼을 작동시켜 한 수신기에서 신호안내음향이 발생되면 한 조를 이루는 맞은편 신호기에서는 보행 시간(보행녹색 및 점멸) 중에 바탕음이 발생하여 시각장애인이 맞은편으로 쉽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횡단하고자 하는 양쪽 수신기의 바탕음은 양쪽에서 교대로 이어서 울려야 한다.

- 신호 안내음향의 발사는 보행자 녹색신호의 시점에 개시하고, 시각장애인의 보행속도(0.9 m/s)를 고려해야 한다.
- 왕복 4차로이하 도로는 보행신호 시간이 짧으므로 음향이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음성전달 (메시지) 내용을 생략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원은 예고음 전달 및 전기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적색신호 및 녹색 신호시에도 항상 공급되어야 하며, 신호안내음향의 오작동을 없애기 위해 두 신호에 따라 구분된 전원을 사용 하여야 한다.
- 음향내용은 8kHz로 샘플링된 음성을 사용하며 3.3kHz ~ 3.4kHz의 저역통과 필터를 통과한 신호를 사용한다.
- 신호 안내음향 내용
보행 적색 시에 신호 안내음향 버튼을 누르면 다음의 <표 6-5>의 음향내용이 신호상태에 따라 자동적으로 안내되어야 한다. 또한 보행 녹색 또는 녹색 점멸 시에 신호 안내음향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부족하오니 다음 신호를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음성전달 메시지가 나온 후에 <표 6-5>의 음향내용이 신호상태에 따라 자동적으로 안내되어야 한다.

<표 6-5> 신호 안내음향의 구성

신호상태	적색	녹색(Walk)	녹색점멸 (Ped. Clear)	
음향내용	예고음	시작음	점멸음	끝 음
멜로디	없 음	딩동댕	없 음	없 음
음성전달 (메시지) 내용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교차로 ○○방향 횡단보도입니다.	○○방향 횡단 보도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멜로디 종료직후)	점멸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없 음
바탕음	없 음	○ 녹색 및 녹색점멸 신호시간 동안 바탕음 계속 (단, 메시지 방송시간 동안 바탕음 정지) ○ 바탕음 발생시간 : 총 주기 2초, 발생시간 0.7초 ○ 바탕음 구분 : 귀뚜라미(동서방향 가로) 새소리(Chirp-Chirp, 남북방향 가로)		

※ 음성전달은 좌측은 남성, 우측 및 단일로는 여성 목소리로 한다.

※ 바탕음은 경찰청 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음원을 사용한다.

■ 위치·신호 안내음향 공통사항

- 위치 및 신호 안내음향을 발생시키는 송신전파 수신거리는 도로폭 등 주변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각각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 수신거리
 - 위치안내음향 : 횡단보도폭의 2배 또는 최대 약 15m 로 한다.
 - 신호안내음향 : 횡단보도 폭 또는 최대 약 10m 로 한다.
- ※ 전파의 특성, 교차로 기하구조, 지주의 설치위치, 시각장애인의 리모콘 작동위치 등에 의

하여 음향신호기가 동시에 작동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남녀의 음성에 의한 좌우 횡단보도의 구분과 더불어 자신이 가고자하는 방향에 대한 안내기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가급적 음향신호기가 동시에 작동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적절히 수신거리를 조정해야 한다.

- 작동 우선순위

- 선 사용자 우선 : 위치 또는 신호 안내버튼이 작동되어 음향을 안내하는 중에 동일한 종류의 안내버튼이 다시 작동되는 경우 전달되던 음향은 계속 안내되어야 한다. 또한 이때의 정보가 수신기에 기억되어 진행되던 음향의 종료 후에 자동적으로 음향이 전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신호 안내음향 우선 : 위치 안내음향의 전달 중에 신호 안내버튼이 작동되면, 위치 안내음향이 중단되고 신호안내 음향이 전달된다.
- 횡단개시 안내 우선
적색 신호 메시지를 안내하는 중에 녹색으로 신호가 변경되면 이를 중단하고 횡단개시 메시지를 안내한다. 신호안내 버튼이 작동되어 대기중인 상태에서 다른 버튼의 작동으로 위치 또는 신호 안내 음향이 전달되는 중에 녹색으로 신호가 변경되면 해당 안내 음향을 중단하고 횡단개시 메시지를 안내한다.

부 록

부록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부록 2. 설문조사표 양식

부록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24] [행정안전부령 제189호, 2011. 1.21, 제정]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육시설에만 해당한다)
 -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2. “노인복지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6.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을 말한다.

제 3 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보육시설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등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노인복지시설등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2.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3.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4.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⑤ 시장등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시·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2. 노인 보호구역 : 별지 제5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3. 장애인 보호구역 :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수
2.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3.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4.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종류별·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관계자
2. 도로관리청 관계자
3.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청 관계자
4. 노인복지시설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담당 공무원 등 시장등이 지정하는 사람

제 5 조(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따른 재정 조치)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6 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6 II. 개별기준의 제133호·제324호 및 제536호의 안전표지

2. 노인 보호구역 : 시행규칙 별표 6 II. 개별기준의 제323호 및 제536호의2의 안전표지

3. 장애인 보호구역 : 시행규칙 별표 6 II. 개별기준의 제324호의2 및 제536호의3의 안전표지

제 7 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에 설치한다.

제 8 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제 9 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②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10 조(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 11 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관리카드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시·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예산 편성 등을 위해 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 대한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이 훼손되거나 손괴(損壞)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폐원·폐교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 12 조(준용규정)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교통 또는 도로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89호, 2011. 1.21>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 3 조(중전의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

신청된 노인보호구역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 등의 이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 및 노인보호구역관리카드를 이 규칙 시행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 5 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4호 중 제429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 서식

[별표] 보호구역 도로표지(제7조제2항제1호관련)

[서식 1]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서식 2]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서식 3]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서식 4]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서식 5] 노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서식 6]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서식 7] 보호구역 관리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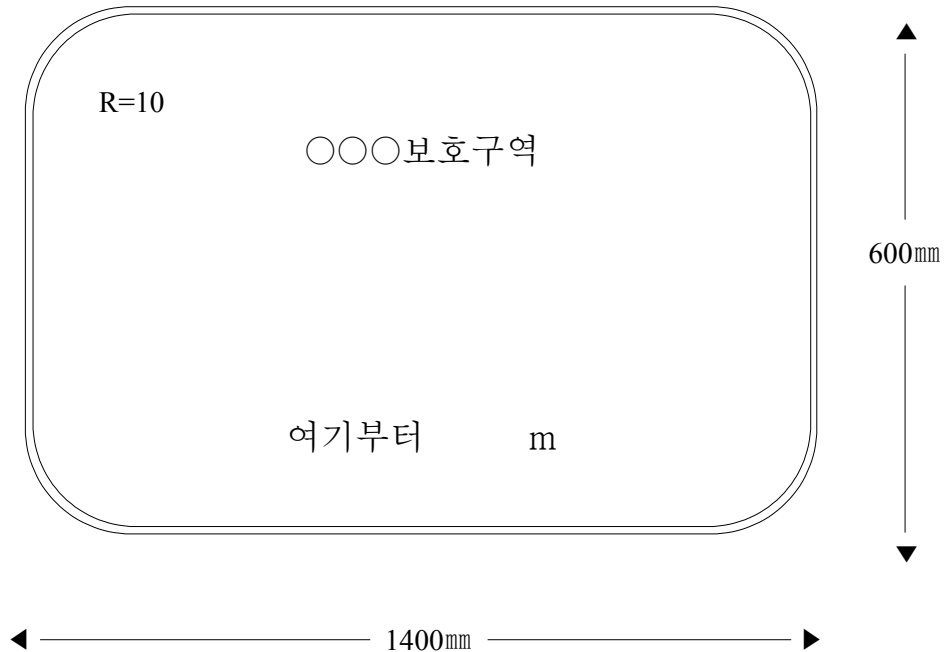
[서식 8]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

[별표]

보호구역 도로표지(제7조제2항제1호관련)

1. 형태

R=20



2. 만드는 방식

가. 지정한 보호구역의 종류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글자크기

한글 : 가로 132mm, 세로 150mm, 간격 45mm

숫자 : 한글과 같음

나. 지주 : 정주식 또는 측주식

다. 색채

바탕 : 황색

글씨·테 : 흑색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대상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학교)장 성명		
학생 수(명)		교사수(명)
지정신청(건의) 구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보호구역 지정신청 시설 주변 약도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대상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장 성명		
노인 수(명)		종사자수(명)
지정신청(건의) 구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보호구역 지정신청 시설 주변 약도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복지시설 명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장 성명		
장애인수(명)		종사자수(명)
지정신청(건의) 구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호구역 지정신청 시설 주변 약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년도)

[○○특별(광역시)시·특별자치도/○○시(군)]

지정 계획	총 개소	초등학교 개소, 유치원 개소, 보육시설 개소			
		특수학교 개소, 학원 개소			
시설물 종류별 수량 및 예산	총수량 및 예 산	○ 교통안전시설 : 종 소요예산 천원 ○ 도로 부속물 : 종 소요예산 천원			총 천원
	교 통 안 전 시 설	○ 신호기 : 기 소요예산 천원 ○ 안전표지 : 개 소요예산 천원 ○ 노면표시 : km 소요예산 천원			총 천원
	도 로 부속물	○ 도로표지 : 개 소요예산 천원 ○ 도로반사경 : 개 소요예산 천원 ○ 과속방지시설 : 개소 소요예산 천원 ○ 미끄럼방지시설 : 개소 소요예산 천원 ○ 방호울타리 : 개소 소요예산 천원			총 천원
	노 상 주차장	○ 폐지 : 개소 소요예산 천원 ○ 이전 : 개소 소요예산 천원			총 천원
소요예산 부담	총 계 천원 ○ 지방자치단체 : 천원 ○ 국토관리청 : 천원				
비 고					

노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년도)

[○○특별(광역시)시·특별자치도/○○시(군)]

지정 계획	총 개소	노인주거복지시설 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개소, 자연공원 개소,
		도시공원 개소, 생활체육시설 개소
시설물 종류별 수량 및 예산	총수량 및 예 산	총 천원 ○ 교통안전시설 : 종 소요예산 천원 ○ 도로 부속물 : 종 소요예산 천원
	교 통 안 전 시 설	총 천원 ○ 신호기 : 기 소요예산 천원 ○ 안전표지 : 개 소요예산 천원 ○ 노면표 시 : km 소요예산 천원
	도 로 부 속 물	총 천원 ○ 도로표지 : 개 소요예산 천원 ○ 도로반사경 : 개 소요예산 천원 ○ 과속방지시설 : 개소 소요예산 천원 ○ 미끄럼방지시설 : 개소 소요예산 천원 ○ 방호울타리 : 개소 소요예산 천원
	노 상 주차장	총 천원 ○ 폐지 : 개소 소요예산 천원 ○ 이전 : 개소 소요예산 천원
소요예산 부담	총 계 천원 ○ 지방자치단체 : 천원 ○ 국토관리청 : 천원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년도)

[○○특별(광역시)시·특별자치도/○○시(군)]

지정 계획	총 개소			
시설물 종류별 수량 및 예산	총수량 및 예 산	○ 교통안전시설 :	중 소요예산	총 천원 천원
		○ 도로 부속물 :	중 소요예산	천원
	교 통 안 전 시 설	○ 신호기 :	기 소요예산	총 천원 천원
		○ 안전표지 :	개 소요예산	천원
		○ 노면표시 :	km 소요예산	천원
	도 로 부속물	○ 도로표지 :	개 소요예산	총 천원 천원
		○ 도로반사경 :	개 소요예산	천원
		○ 과속방지시설 :	개소 소요예산	천원
		○ 미끄럼방지시설 :	개소 소요예산	천원
		○ 방호울타리 :	개소 소요예산	천원
	노 상 주차장	○ 폐지 :	개소 소요예산	총 천원 천원
		○ 이전 :	개소 소요예산	천원
소요예산 부담	총 계 천원 ○ 지방자치단체 : 천원 ○ 국토관리청 : 천원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보호구역 관리카드

[○○특별(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제 호

(앞쪽)

보호구역 지정 시설 명		
소재지	(전화번호 :)	
지정일자	년 월 일	지정시설의 시설장 성 명

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내용

[illegible]

작성자 (계급) (성명)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 보호구역 주변 약도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

[○○특별(광역시)시·특별자치도/○○시(군)]

1.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

(앞쪽)

구 분		지정대상 (개소)	지정현황 (개소)	보호구역 총연장 (km)
어 린 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보육시설			
	학원			
노 인 보호구역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 체육시설			
장 애 인 보호구역	장애인 생활시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현황

구 분	교통신호기 (기)	교통안전표지 (개)	노면표시 (개소)
어 린 이 보호구역			
노 인 보호구역			
장 애 인 보호구역			

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 설치·관리 현황

구 분	도로표지 (개)	과속방지턱 (개)	도로반사경 (개)	미끄럼방지 시설 (개)	방호울타리 (개소)
어 린 이 보호구역					
노 인 보호구역					
장 애 인 보호구역					

4.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관리 현황

구 분	계	속도·신호위반 검용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어 린 이 보호구역				
노 인 보호구역				
장 애 인 보호구역				

부록 2. 설문조사표 양식

(시설의 특성에 맞게 설문내용을 가감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보호구역 통행특성 등」에 관한 의견조사

○ 시설명 :

안녕하세요

이 설문조사는 여러분의 통행특성 등을 조사하여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담당자 :

20 년 월 일

1. 등교(등원) 시간 ?

- ① 07 : 30 ~ 08 : 00
- ② 08 : 00 ~ 09 : 30
- ③ 09 : 00 ~ 10 : 00
- ④ 10 : 00

2. 등교(등원) 소요시간 ?

- ① 30분 이상
- ② 30 ~ 20분
- ③ 20 ~ 10분
- ④ 10분 이내

3. 등교(등원) 시 교통수단 ?

- ① 도보
- ② 자전거
- ③ 자가용

- ④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 ⑤ 기타

4. 귀가 시 교통수단 ?

- ① 도보
- ② 자전거
- ③ 자가용
- ④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 ⑤ 기타

5. 등교(등원)·귀가 시 이용하는 출입문 ?

- ① 정문
- ② 후문
- ③ 기타 ()

6. 등교(등원)·귀가 시 가장 위험한 장소 ?

(붙임 지도에 표시 및 사유 기재)

7. 등교(등원)·귀가 시 교통사고를 경험했거나 목격한 장소 ?

(붙임 지도에 표시 및 상황 기재)

8. 등교(등원)·귀가 시 차가 다니는 도로를 건널 때는 ?

- ① 반드시 횡단보도 또는 육교로 건넌다.
- ② 횡단보도나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많이 한다.

9. 횡단보도를 건너기전에 녹색등이 켜지면 어떻게 하는가 ?

- ① 차량이 오는지 확인한 후 건넌다.
- ②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지 않고 건넌다.

10. 횡단보도를 건너기전에 녹색등이 깜빡이면 어떻게 하는가 ?

- ① 안심하고 천천히 건넌다.
- ②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빨리 건넌다.
- ③ 다음 녹색등이 켜질 때까지 기다린 후 건넌다.

11. 등교(등원)·귀가 시 건너는 횡단보도 수는 ?

- ① 1개
- ② 2개 이상 (개)

12. 등원·귀가 시 횡단보도의 녹색시간 길이는 ?

- ① 알맞다
- ② 길다
- ③ 조금 짧다
- ④ 너무 짧다

1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통행로의 통행방법 ?

- ① 차량이 오는 반대쪽으로 통행한다.
- ② 차량이 지나가는 같은 방향으로 통행한다.
- ③ 도로의 중앙으로 또는 양쪽으로 통행한다.

14. 보도의 폭이 좁은 통행로에서 친구들과 같이 갈 때 ?

- ① 불편해도 보도를 벗어나지 않고 일렬로 통행한다.
- ② 보도가 좁으면 차도까지도 통행한다.

15. 등교(등원)·귀가 시 안전한 통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지점과 내용은 ?

(붙임 지도에 표시 및 상황 기재)

붙임 : 시설주변 약도 1부

※ 시설주변 지도상에 집에서부터 시설까지 통행로를 빨간 싸인펜으로 표시하고 꼭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점 표기 및 필요한 개선내용을 기재



<통행로 현황 조사 방법(예시)>